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중국의 조세환경 변화가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국제통상전공)

강 승 구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중국의 조세환경 변화가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도교수 최 순 권

이 논문을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2월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국제통상전공)

강 승 구

강승구의 경영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8년 2월 23일



주 심 경제학박사 하 명 신 인

위 원 경영학박사 윤 광 운 인

위 원 경영학박사 최 순 권 인

목 차

| | |
|------------------------------|----|
| I. 서론 | 1 |
| 1. 문제제기 | 1 |
| 2. 연구목적 | 2 |
| 3. 연구의 방법과 범위 | 4 |
| II. 중국 조세의 변천과정 | 7 |
| 1. 현대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 | 7 |
| 2. 현대 중국의 조세제도 변천 | 12 |
| 가. 조세환경의 변화 | 12 |
| 나. 조세정책의 변천 | 15 |
| 3. 중국의 현행 조세체계 | 19 |
| 가. 중앙세와 지방세 | 19 |
| 나. 조세징수관리 | 20 |
| 다. 중국의 조세체계 | 22 |
| 라. 세목별 주요내용 | 24 |
| III. 향후 중국의 조세제도 운영방향 | 28 |
| 1. 대중국 투자동향 | 28 |
| 2. 현행 중국 조세제도의 문제점 | 32 |

| | |
|-------------------------------------|-----------|
| 3. 향후 중국의 세정운영 방향 | 41 |
| 가. 외국기업 세금혜택 축소 | 41 |
| 나. 고수입 업종 세원관리 강화 | 42 |
| 다. 조세회피 공조 강화 | 43 |
| 라. 세금징수 강화 | 44 |
| 마. 조세제도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 46 |
| IV. 중국 조세제도 변화가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 52 |
| 1.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 52 |
| 가. 설문조사 개요 | 52 |
| 나. 인구통계적 변수 | 53 |
| 2. 실증분석 결과 | 57 |
| 가. 문제점 인식정도 분석결과 | 57 |
| 나. 향후 세정운영 방향 예측정도 분석결과 | 59 |
| 3. 중국 조세제도 변화에 따른 국내기업 영향 예측 | 61 |
| 가. 조세부담 증가 | 61 |
| 나. 수익성 악화 | 62 |
| 다. 세무조사 강화 | 68 |
| 라. 외환관리 강화 | 71 |
| V. 국내기업 대응방안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 75 |
| 1. 순응형 | 76 |

| | |
|---------------|-----------|
| 가. 기업차원의 대응방안 | 76 |
| 나.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 78 |
| 2. 관망형 | 82 |
| 가. 의사결정요인 | 82 |
| 나. 향후 전망 | 85 |
| 3. 철수형 | 87 |
| 가. 철수시 유의사항 | 87 |
| 나.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 91 |
| VI. 결론 | 93 |
| 참고문헌 | 96 |
| 부 표 | 98 |



표 목 차

| | |
|--|----|
| <표2-1> 중국의 현행 각급 세무기구 조직도 | 21 |
| <표2-2> 중국의 세목별 조세체계 | 22 |
| <표3-1> 국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신고기준) | 31 |
| <표3-2> 증치세율 | 34 |
| <표3-3> 업종별 기업소득세 우대내용 | 38 |
| <표3-4> 개발구별 기업소득세 우대내용 | 39 |
| <표3-5> 개인소득세율 | 40 |
| <표4-1> 설문과정 요약 | 53 |
| <표4-2> 성별·연령분포 | 53 |
| <표4-3> 학력분포 | 54 |
| <표4-4> 직위분포 | 54 |
| <표4-5> 업종분포 | 55 |
| <표4-6> 매출규모 현황 | 55 |
| <표4-7> 종업원수 현황 | 56 |
| <표4-8> 중국의 조세제도에 대한 문제점 인식정도 설문조사 결과 | 58 |
| <표4-9> 향후 중국의 세정운행 방향에 대한 예측정도 설문조사 결과 | 60 |
| <표4-10> 총투자금액 대비 등록자본 비율 | 73 |
| <표5-1>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설문조사 결과 | 87 |

도 표 목 차

| | |
|-----------------------------|----|
| <도표3-1> 국가별 대중국 직접투자 규모 | 29 |
| <도표3-2>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추이 | 29 |
| <도표4-1>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인가? | 61 |
| <도표4-2> 수익구조가 악화될 것인가? | 63 |
| <도표4-3> 원가상승 요인이 증가할 것인가? | 63 |
| <도표4-4> 규제와 간섭이 증가할 것인가? | 68 |
| <도표4-5> 분식회계 위험이 증가할 것인가? | 68 |
| <도표4-6> 투자자금 회수가 어려워 질 것인가? | 72 |
| <도표5-1> 국내기업 대응유형 | 75 |
| <도표5-2> 신기술개발 자금지원 | 78 |
| <도표5-3> 중국내 마케팅활동 지원 | 79 |
| <도표5-4> 중국 정부와 경제정책 협력강화 | 80 |
| <도표5-5> 중국 과세당국 세무조사시 적극대응 | 80 |
| <도표5-6> 중국조세 전문가 양성 | 81 |
| <도표5-7> 환율, 금리 등 변동 | 83 |
| <도표5-8> 중국시장의 성장성 | 83 |
| <도표5-9> 원자재 등 물가상승 | 84 |
| <도표5-10> 중국과 우리정부와의 관계 | 85 |

부 표

| | |
|-----------|----|
| <부표1> 설문지 | 98 |
|-----------|----|

Sharks: A Study on the Influences upon the Local enterprises in China
made by the Changes of Chinese Taxation Circumstances

Seung Koo Kang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 Logistics, Th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Many multinational enterprises have been invested lots of money and capital in china, the center country of the world economic. Korea is also one of the main investment countries in china. At this point,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suggest something on the chinese taxation system centered on counterplans of domestic enterprises for the chinese tax circumstances changes.

The first chapter deals with the motives which I'd like to approach this paper, research method and scope.

The second chapter deals with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modern chinese taxation as a theoretical background. Looking into the contents in brief, they are consisted of three main information. First contents of them is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modern chinese economic. Second is on the transition process of the modern chinese taxation and third is on the present chinese taxation system.

The third chapter deals with the operating directions of the chinese taxation in the future. Looking into the contents briefly, they are also consisted of three

main topics. First topic of them shows the investment trend to china. Second one suggests the problems of the present chinese taxation and in third I predict the operating directions of the chinese taxation in the future as follows;

China will abolish or downsize the incentives for multinational companies.

China will reinforce the taxable management of high-earned-income business types.

China will put an emphasis on protect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from evading tax between both countries.

China will do best to collect taxes more than ever before.

China will try to enhance the cleanliness of taxation institution and tax administration.

The fourth chapter diagnoses the influences to multinational companies caused by above mentioned changes of the chinese taxation system. First comment of them is on the survey using by questionnaire method about the influences to domestic companies putting on the local enterprises in china. Second one suggests the results gained by the survey and they are as below mentioned;

Chinese taxation authorities will enlarge the burden of tax.

The benefit structure of local companies in china will be more deteriorated than ever bef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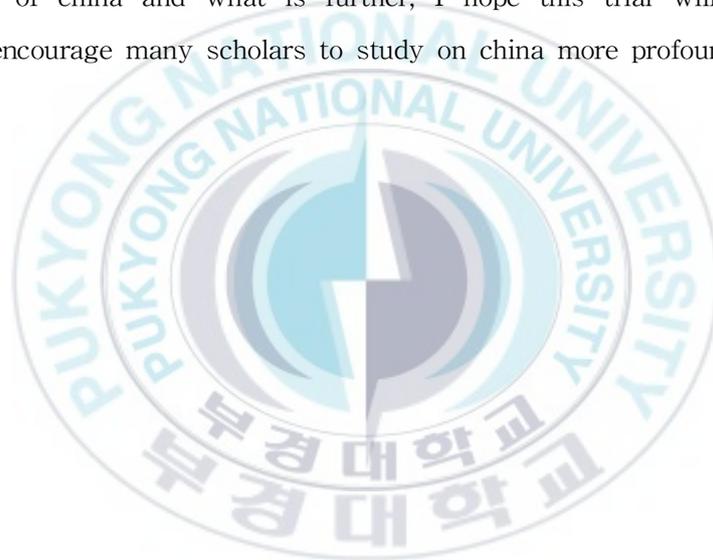
Chinese taxation authorities will reinforce tax inspection to the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foreign exchange management.

The fifth chapter explains counterplans of the local companies by scenarios. First of them is a compliance type enterprises which don't leave from china. Second one is a wait and see type companies which do not make a decision to leave or not. Third one is a withdrawal type firms which want to leave from china. This chapter describes solutions, factors and anticipation(in case of wait and see type) from the point of enterprises and our government type by type.

The last chapter mentions the limits & restrictions of this research, and

suggests the assignments to study further in the future. Especially it's very difficult to reflect on the recent economical situations of the china because of the lack of information and hardship of access to it. In addition, I tried to do my best to get back the questionnaires but it regrets that I didn't collect them abundantly from the domestic companies putting on the local enterprises in china due to short time and related companies' noncooperation.

To make a long story short, I expect this paper can give a much helpfulness to people who are interest in doing business in china and need the information of china and what is further, I hope this trial will be a good motive to encourage many scholars to study on china more profound.



I. 서론

1. 문제제기

현대 자본주의 체제하에서는 세계화, 국제화로 인하여 국경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고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가진 다국적기업들이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할 위해 값싼 노동력과 넓은 시장을 찾아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 궁극적으로 초일류기업들이 지향하고 있는 이윤극대화의 열매는 진출하였거나 진출할 각국의 조세제도에 의해 결국 조세의 부담으로 귀결된다.

특히 각국의 조세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조건 등을 배경으로 다양한 특성을 지니며 발달해 왔다. 현대 자본주의에서의 회계와 조세제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오늘날의 국가는 조세가 중요한 물질 기반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흔히 조세국가라고 하는데 국가는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 사회, 경제적 행위를 수행함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세 수입의 징수 체계와 관리 방식은 각국의 특색에 맞게 조정, 수정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기반이 되어진다.

사회주의 국가의 대표 주자였던 소련이 1991년에 붕괴 하였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물결이 일고 있으며 그 파급효과는 세계 여러 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붕괴된 후의 제3세계 등은 미국을 주축으로 한 자본주의 노선을 채택하여 새로운 정세의 변화를 시도하였고,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던 거대 중국은 아직도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금씩 개방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2001년 WTO 가입 후에 급속한 사회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인 자본주의의 틀 안에서의 경제 활동은 화폐중심적인 경제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7년 IMF를 경험한 이후 고임금, 고물가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여 웬만한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서는 생산·물류비용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한 대기업, 중소기업 및 뜻있는 기업들은 IMF 이후 비교적 노동력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시아, 중국 등에 지속적으로 해외에 진출하고 있다. 시장 규모, 지리적 위치, 역사적 특수성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할 국내기업이 현지에서 직면하게 될 중국의 현행 조세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중국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미리 짚어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중국은 지난 1991년 이후 10여 년 동안 연 평균 10.2%에 이르는 높은 GDP 성장률을 시현한 바 있다. 또한 세계경제가 침체국면에 있었던 2002년에도 GDP가 8%, 수출이 22.1%를 증가하는 등 고도성장을 유지하였으며, 2003년 상반기에는 GDP가 8.2%를 달성하여 연간 목표치인 7%를 상회하였다.

중국은 이처럼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FDI (해외직접투자 :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유치함으로써 기술이

전을 진전시키고 있다. FDI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으로 유입된 FDI 규모(실행기준)는 1991년 112억 달러에서 2002년에는 527억 달러로 연평균 15.1% 증가하였으며, 2002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외자유치 실적을 기록하였다. 2003년 1~4월 중에도 FDI 실적은 실행기준으로 178.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기초가 유지될 경우 2003년도 투자 유치 규모는 사상 최고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01년 11월, WTO 가입을 계기로 무역·산업구조 및 대외관련 정책에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조세측면에서 그동안 외자기업에 부여하던 각종 특혜조치를 점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하고 내·외자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방침과 계획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으며 외자도입정책도 단순한 외자도입에서 관리형으로 전환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로 인하여 중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무행정도 종전보다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양국은 1992년 8월 수교이후 정치·경제 등 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의 대중 연간 투자액을 기준으로 중국은 1994년부터 미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 되었으며, 2002년 9월까지의 신고액을 기준으로 미국을 제치고 1위의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이 중국의 조세제도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제도의 발전 동향을 지속적이고 면밀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절세대책을 마련하여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급격한 투자의 증가에 비해 중국의 조세제도에 대한 연구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관련 자료들도 극히 단편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중국의 현행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봄과 동시에 WTO 가입에 따른 세계개혁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활동에 있어서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소시키고 효율적 신규투자 의사결정과 전략적 세무접근에 도움을 주려는데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적 검토를 하고 실제자료를 수집, 분석하는 실증적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중국의 조세제도에 관한 국내외의 이론적·실증적 연구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이론적인 배경은 본 논문의 제2장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지만, 우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조세제도에 관한 기존연구는 설문조사연구와 실제자료연구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설문조사연구란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근무연수, 직위, 업종, 매출규모, 종업원수 등이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면접, 전화, 설문지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연구방법 의미한다. 그리고 실제자료연구는 납세자가 과세당국에 제출한 납세신고서 또는 납세자로부터 수집한 신고자료 등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조세행위를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말한다.

설문조사연구는 외국에서도 많이 진행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웬만한 연구에서는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경제현상과는 달리 조세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납세자들의 조세에 관한 인식

과 태도를 설문을 통해 연구하여 그 결과를 통계학적 수치로 객관화시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연구를 과감히 시도하고자 한다. 객관화 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더라도 본 연구가 중국진출을 염두 해 두고 있거나 기왕에 진출한 기업들에게 큰 흐름에서 중국조세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만 있다면 그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연구를 시작한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조세에 관한 실제조사연구는 과세당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상공회의소 등 정부 또는 국책기관에 의하여 주로 취급되어져 왔으나 이는 주로 단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사실상 부족한 실정이다. 즉 대부분의 연구가 중국의 세법체계 위주로 다루고 있어 기업을 경영하는 CEO 입장에서는 그다지 유용한 정보가 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중국 조세체계 중심의 연구를 탈피하여 거시 경제적 측면에서 먼저 1950년대 이후 중국의 조세정책 변천사를 짚어보고 각종 통계자료의 활용 및 설문조사연구를 통해 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토대로 중국의 향후 조세정책 방향과 개혁적 과제들을 제시함으로써 특히 중국 현지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제1장 서론에서는 중국의 조세제도를 왜 연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한 연구의 필요성, 그에 따른 연구의 목적 및 연구의 방법과 범위에 관해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1950년대 이후 중국의 현대적 조세제도에 대한 선행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의 근

간으로 현행 중국의 조세체계와 변천사, 각 시대별 조세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중국의 조세정책 방향을 과학적, 합리적으로 예측함에 있어서 그 토대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제3장에서는 중국 투자 동향과 현행 중국 조세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중국의 세정운영 방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한 현행 중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대해 중국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기법을 활용하여 이들 설문대상 기업들로부터 수집·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중국의 조세환경 변화가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태조사 및 실증분석을 통해 좀 더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제4장 설문조사연구 및 실제자료연구에 의하여 도출된 중국 조세제도 변화가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 요인들이 무엇인지? 에 대해 살펴보고, 나아가 국내기업의 대응유형별로 우리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본 논문의 주요 논점을 요약하고, 논문 진행과정에서 직면한 연구의 한계 및 앞으로 좀 더 접근할 필요가 있는 추가적인 연구 과제들을 제시해 봄으로써 향후 새로운 도전과 시도들을 지켜보고자 한다.

II. 중국 조세의 변천과정

1. 현대 중국의 경제발전 과정

가. 제1시기 - 회복과 개조 (1949 ~ 1957)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 정부는 먼저 국민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3년간에 걸쳐 다음과 같은 중대한 조치를 단행하였다.

(1) 관료자본의 몰수

관료자본은 주로 소수의 관료자산계급에 의해 통제되는 봉건 매관성 국가 자본주의 경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1929년 장개석의 남경정부 수립 이후 국민당이 일당독재를 해오면서 군벌관료들이 외국으로부터 차관, 원조, 철도 건설, 기계수입 등으로 축적한 자본을 이용하여 외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거나 민간기업을 지배하는 등 관료자본이 전형적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당시 관료자본은 전국 은행자본의 2/3, 공업자본의 2/3, 교통운수업 고정자산의 4/5를 차지하고 있었다. 국민당 정부가 전복된 후에 관료자본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몰수되어 국영경제로 전환되었다.

(2) 토지개혁의 완성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전에는 농촌인구의 10%도 안 되는 지주와 부농이 소유경지가 전국 경지의 70% 이상이었으며, 농촌인구의 90% 이상인 빈농과 소작농, 중농(中農)의 소유경지는 30%에도 못 미쳤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전국적으로 전개된 토지개혁은 1952년 말에 이르러 기본적인

로 완성되었다. 토지개혁을 통하여 무수한 농민들은 토지를 분배받게 되었으며, 이로부터 2천여 년 간 중국에 시행되었던 봉건 지주계급 토지소유제는 완전히 폐지되고 농업생산력은 유례없는 활기를 찾게 되었다.

(3) 재정의 통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위기에 처한 재정경제의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1950년 3월부터 국가의 재정경제에 대한 통일된 관리와 지도를 시행하여 전국의 재정수지, 물자관리, 현금관리를 통일시켰다.

이상과 같은 중대한 조치를 통하여 중국정부는 전국의 경제망을 장악하고 경제질서를 정비하여 생산력을 향상시켰다. 1952년 말에 이르러 국가의 재정경제 상황이 상당히 호전되면서 국민경제는 되살아나고 국민생활은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국민경제가 회복된 이후 1953년부터 중국정부는 국민경제 발전의 제1차 5개년계획을 시행하였으며, 이로부터 중국경제는 계획경제 시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목표는 156개 항목에 중심을 둔 공업건설에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것이었다. 과거에 매우 취약했던 기초공업 분야에 항공, 자동차, 트랙터, 발전, 야금, 광산, 계측기 설비 등과 같은 새로운 공업 부문을 설치하여 공업화를 위한 일차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농업, 수리사업도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공업총생산액은 연평균 27.5%, 농업총생산액은 연평균 4.3% 증가하여 국민경제는 비교적 순조롭게 성장하였다.

농공업 생산이 성장한 제1차 5개년계획 기간에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 상공업에 대해서도 사회주의 개조를 단행함으로써, 중국은 공유제경제가 주축이 되면서 다양한 경제형태가 병존하는 사회주의 경제제도를 수립하였다.

나. 제2시기 - 계획경제와 조정 (1958 ~ 1965)

제2차 5개년계획의 중점은 역시 중공업 중심의 공업건설과 국민경제의 기술개혁,全民소유제와 집체소유제의 확대 발전이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당시의 현실과 생산력 발전의 규칙을 위배하면서까지 '대약진'과 '인민공사' 운동을 무리하게 추진한데다가 3년간 연속해서 자연재해를 입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경제는 균형을 잃고, 국가와 국민은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1961년부터 중국정부는 국민경제에 대한 조정 작업을 벌여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

1965년에 이르러 국민경제는 원래의 어려웠던 국면을 전환시키면서 비교적 큰 성장을 이룩하였다. 1957년에 비해 공업 분야에서는 구조가 현저하게 개선되고 완비되었으며 생산액이 대폭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강철은 2.5배, 석탄은 1.8배, 발전량은 3.5배, 석유는 8배나 생산량이 증가하였다. 농업분야에서는 대체로 1957년의 생산력 수준을 초과하였다. 과학기술분야에서는 제1차 핵실험의 성공으로 중국의 과학기술이 일부 영역에서는 이미 세계 선진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예고하였다. 이 시기에 중국의 경제는 무수한 어려움 속에서도 물질, 기술, 인재 방면 등에서 미래의 경제건설을 위한 기반을 견실히 다져나갔다.

다. 제3시기 - 본격적인 계획경제 실시 (1966 ~ 1976)

1966년 중국은 제3차 5개년계획을 시행하였다. 과거 몇 년간의 조정 작업을 통하여 중국의 국민경제는 번영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경제성장 속도나 경제효과를 막론하고 모든 분야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에 시작된 문화대혁명의 시행착오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면서 중국경제는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은래(周恩來: 저우은라이)와 덩소평(鄧小平: 덩샤오핑)을 중심으로 한 정치 지도자들의 경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으로 국민경제는 다소 호전될 조짐을 보였으나, 사인방의 완강한 방해로 또다시 난관에 부딪혀야만 했다.

제3, 4차 5개년계획 기간에도 중국경제는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 식량은 비교적 안정된 증가를 유지하였고, 공업 · 교통 · 건설 ·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너무도 막대했기 때문에, 경제발전 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하고, 경제적 상황도 점차 악화되어 거의 붕괴될 위기에 직면하였다.

라. 제4시기 - 경제발전 호황시기 (1977~현재)

1976년 10월 사인방이 타도되고 10년간 지속되었던 문화대혁명이 종결되었다. 1978년 말 중국공산당은 11기 3중 전회를 소집하여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한 '4개현대화' 정책을 발표하였다. '4개현대화'란 농업, 공업, 국방 및 과학기술 등 4개 부분의 현대화를 가리키는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모택동 사후 2000년 말까지 이 4개 현대화를 실현할 것을 목표로 하여 제반 정책적 개혁조치를 단행하고 경제건설에 힘을 기울였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중국경제는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정상적인 발전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기간에 제정된 제5, 6, 7, 8, 9차 국민경제 5개년계획은 모두 예정된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였다. 특히 개혁 개방정책의 강력한 실행으로 중국경제는 체제 면에서 과거의 속박으로부터 탈피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농업은 여러 해 계속해서 풍작을 이루었고,

공업은 더욱 왕성하게 발전하였다. 대외무역은 빠르게 성장하고 시장은 활기를 띠었으며, 국력은 크게 증강되고 국민생활은 점진적으로 향상되었다.

다만 이러한 발전 속에서도 불가피하게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공업생산의 초고속 발전, 고정자산 투자의 과대 규모, 소비자금의 고속 성장, 지나친 물가상승, 외화잔고의 하강, 불합리한 산업구조, 지역간 경제발전의 불균형,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미비, 일정한 질차의 불균형과 불안정 등이 문제시되었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적절한 조정을 통하여, 1990년대 이후 중국경제는 지속, 안정, 조화, 고속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2001년 11월 10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는 중국의 WTO 가입을 공식 승인하였으며, 이로써 중국은 WTO 가입을 위한 15년간의 대장정을 끝내고 마침내 세계경제의 대열에 과감히 합류하여 21세기 새로운 도전과 발전의 전기를 맞고 있다.

이에 2002년 11월에 소집된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다시 21세기 중국경제건의 목표를 소강(小康: 여유 있는 생활이 가능한 수준)사회 건설에 두고, 2020년에 중국의 국내총생산액을 2000년의 4배가 되도록 한다는 21세기 현대화건설 3단계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연평균 7.2% 이상의 고도성장을 유지해야 하지만, 중국정부 지도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충분히 예상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중국 인민들을 독려하고 있다.¹⁾

1) 린이후 外 (한동훈·이준엽 옮김), “중국의 개혁과 발전전략”, (서울 : 백산서당, 2001), pp.127-277.

정재호, “중국 개혁-개방의 정치경제 : 1980-2000”, (서울 : 까치글방, 2002), pp.31-34.

2. 현대 중국의 조세제도 변천

가. 조세환경의 변화

(1)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최근의 국내외 경제변화는 중국경제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국제방면에서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다수 국가의 경제성장속도가 둔화되고 무역이 위축되어서 중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쳤으며, 국내방면에서는 중국시장의 구조가 공급자중심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내수부진이 경제성장을 제약하였다. 수요부족, 수출곤란, 물가하락, 실업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중국정부는 소비자극을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채발행을 확대하고 SOC 투자를 확대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투자를 확대하며 또한 경제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였다.

(2) 세계화

경제의 세계화란 무역의 자유화, 금융의 국제화, 생산의 다국적화를 의미한다고 할 때, 경제의 글로벌화는 선진국들에게는 시장 확대의 기회이며, 개발도상국들에게는 발전의 기회이다.

중국은 15년간의 노력으로 2001년에 WTO에 가입했다. WTO 가입이란 실제적으로는 경제의 세계화라는 조류에 편입됨을 의미하며, 중국의 입장에서 경제의 세계화에 대한 도전이라는 중대한 전략적 대응을 준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WTO는 국제무역에 있어 회원간에 공평한 경쟁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해 회원국간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되었는데 특히 조세와 관련되어 국제무역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해야 될 원칙으로서 최혜국대우원칙, 국민대우원칙, 반보조금원칙, 투명도원칙을 들 수 있다.

시장화 개혁과정에서 중국의 특수상황에 따라 제정된 조세정책 중에서 WTO의 규칙에 위배되는 규정 및 국제관례상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해야 되고, 다음으로는 WTO의 원칙하에서 무역자유화가 경제 및 조세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의 세계화에 따른 조세정책 및 조세제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경제의 세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생산요소, 특히 자본의 국제이동이 가속화되고, 정보·통신의 개발과 투자위험을 극소화하기 위한 신종금융상품의 개발로 인하여 세계 자본시장의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국제 자본이동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벽도 빠른 속도로 제거되는 추세이다. 각국은 국내 자본의 축적 및 해외 유출 방지, 외국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자본에 대한 낮은 세부담을 유지하려는 동기를 갖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국가간 조세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3) 지식정보화 사회 도래

국제적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로 인하여 기존의 조세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등장은 거래자의 신원 및 소비지 확인 곤란, 소득 추적 곤란 등 조세행정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 있어서도 공급장소, 재화와 서비스의 구별, 서비스의 유형 구분, 고정사업장의 정의, 정상가격의 적용 곤란, 소득의 성격 구분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중국정부는 IT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조세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까지 IT산업에 대한 증치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같음) 경감 및 경감부분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였다. 새로이 시작하는

S/W사업에 대한 기업소득세를 2년 동안 면제하고 3년간은 반감하고 있으며, S/W생산 기업의 임금 및 교육훈련비는 실제발생비용을 납부세액 계산시에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4) 고령화 사회 진입과 사회보장 욕구 증대

인구 노령화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사회문제이다. 2002년 3월의 전국노령화공작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1억 3,200만 명이며, 매년 3.2%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의 노령화 추세 및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는 중국정부의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1980년 중기 이래 이미 양로보험, 실업보험,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했었으나,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이 진전되고 현대화된 기업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는 제도의 불합리성, 재원의 불안정, 관리의 비합법성, 지출과다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최근에는 중국경제의 유효수요 부진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 촉진과 경제성장 유발, 국유기업 개혁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도 사회보장체제 완비의 시급성이 중국지도부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 이미 사회보장제가 시범적으로 징수 중에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사회보장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²⁾

2) 한상국, “중국의 최근 조세정책”, 재정포럼 2004년 7월호, pp.7-10.

나. 조세정책의 변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이후 조세제도는 개혁·개방의 추진을 분기점으로 단계로 나뉜다. 개혁·개방 정책의 추진 전인 계획경제체제하의 제1단계(1953~1978)는 전통적인 사회주의체제와 그 관리방식하에서 세제가 도입 및 정비된 시기이다. 개혁·개방 정책에 착수한 이후인 제2단계(1978~1991)는 경제체제에 비교적 큰 변화가 발생한 가운데, 세제가 정비되고 또 새로운 세목이 도입되어서 시행된 시기이며, 제3단계(1992~현재)에서는 시장경제에 적합한 조세제도 개혁을 시도한 시기이다.³⁾

(1) 제1단계 (1949~1977) - 조세제도 수립, 문화대혁명으로 후퇴

제1단계 전기인 1949년부터 1957년까지의 시기에는 국민경제가 회복되면서 경제전반을 사회주의로 개조하는 시기로서 중구의 새로운 조세제도가 수립되어 전국에 통일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는 이후 중구의 정치,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도태되거나 새롭게 신설되면서 중국 조세제도의 기반을 이루게 된다. 1953년 중국은 경제상황이 호전됨에 따라 종전의 화물세 중 일부를 분리해서 상품유통세를 징수하고 화물세와 영업세를 개정하였으며 특별소비행위세를 폐지하였다.

이 시기에는 소유제별 경제성분에 따라 적용세율과 면세제도를 차별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기존의 자본주의경제를 사회주의로 개조하는데 조세를 적극 활용하였다.

제1단계의 후기인 1958년부터 1978년까지의 시기에는 문화대혁명에 의해 조세제도가 대폭 축소되고 조세무용론까지 대두되면서 중국의 조세제도가 크게 후퇴한 시기이다, 중국은 1958년 공상업계에 대한 사회주의 개조가

3) 한상국, “중국 조세제도와 대중국 투자기업의 조세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pp.43-46.

기본적으로 완성되고 경제관리 체제의 개혁을 위해 조세의 단순화를 기본 목표로 하는 세제개혁을 단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원래의 화물세, 상품유통세, 영업세 및 인지세를 합하여 공상통일세로 개정하는 일련의 세제개혁으로 인하여 중국의 조세구조는 이후 간접세 중심의 유통단계에 대한 과세방식을 위주로 하는 세제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중구의 건국 초기 조세제도는 14종으로 구성되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중국은 농촌에 있어서는 인민공사제도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조세징수가 정지되고 도시에 있어서는 국영기업의 조세와 이윤의 상납을 통합하는 시도가 있었다. 1959년부터 1961년에 걸쳐 중국은 대약진운동의 실패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국민경제가의 침체가 심각하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농업세 등에 대한 조세부담 경감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농촌에 정기시장이 출현함에 따라 1962년 집시교역세를 징수하였다.

1966년부터 1976년간의 문화대혁명 기간 중 중국의 조세제도는 세계의 합병, 징수방법의 간소화, 불합리한 공상세수제도의 개혁이라는 원칙하에 조세제도가 극도로 단순화되었다. 또한 조세무용론이 등장하기도 했으며, 이는 이후 중국인의 납세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발단이 되었다.

(2) 제2단계 (1978~1991) - 사회주의 현대화, 세제개혁 단행

문화대혁명 이후 모택동이 사망한 1978년 이후 덩소핑이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하면서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세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우선 기존의 세제를 정비하고 또 새로운 세목을 도입하였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서 「중외합자경영기업소득세법」, 「외국기업소득세법」 등의 대외세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이후 중국의 조세체계는 대내세제와 대외세제라는 이원적인 구조로 발전하였다.

중국은 1983년 국영기업에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개혁, 즉 利改稅改革을 두 차례에 걸쳐 단행하게 된다. 이러한 利改稅改革은 기업이 실현한 모든 이윤을 국가에 상납하는 전통적인 사회주의 방식에서 이윤의 일정비율을 조세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국가와 기업의 이익분배관계를 조세제도라는 법률의 형식으로 고정화하였고, 기업의 자주권 확대에 따른 기업 활력의 증대 및 조세에 의한 강제성의 확보로 국가 재정수입의 안정적인 증가를 가져왔으며, 중국의 조세제도를 유통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며, 1984년 9월 제2차 利改稅改革을 단행하였다.

첫째, 유통단계의 조세를 정비하여 종래의 공상세를 산품세(產品稅), 영업세, 증치세의 3종류로 대체하였다.

둘째, 건물세(房產稅), 토지사용세, 도시건설세, 차량선박사용세 등 4가지 지방세를 징수하여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을 확대하였다.

셋째, 대·중형 국영기업에 대하여 기업소득세 납부 후 이윤에 대하여 조절세(調節稅)를 부과하였다. 이로써 중국 세제의 기본 골격이 완성되어서 1994년 세제개혁 전까지 시행되었다.

한편 다양한 소유제형식의 발전에 따라 『집체기업소득세잠정조례』(1985) 및 『도시개체공상호소득세잠정조례』(1986)가 제정되었다. 개인소득 격차에 따른 개인수입조절목적의 『개인수입조절세』(1986)를 제정하였고, 섭외기업소득세법을 통합한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소득세법』(1991)을 제정해서 외자기업의 소득세법을 더 한층 체계화하였다.

(3) 제3단계 (1992~현재) - 시장경제에 적합한 조세제도 개혁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경제체제개혁이 가속화되고 시장화가 급속히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공상세제로는 더 이상 조세의 거시조절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그동안 준비하여 온 경

세계개혁 프로그램의 일부로서 1994년 시장경제에 적합한 조세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세계개혁의 기본목표(지도이념)는 세업의 통일, 공평한 세부담, 세제의 간소화, 합리적인 분권제, 합리적인 분배관계 및 분배구조의 규범화 등을 통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요구에 부합되는 조세체계의 수립이다. 세계개혁의 기본원칙은 중앙정부의 거시조정(macro control)능력 강화, 개인간의 소득격차 조절, 지역간의 경제발전 격차 조절, 발전의 촉진, 공동의 富 실현, 공평한 세부담의 구현, 평등 경쟁의 촉진, 국민경제의 효율성 제고와 세제의 간소화 및 규범화이다.

이번 세계개혁은 1949년 이후 그 규모가 가장 크고 범위도 가장 광범위하고 내용 면에서도 가장 깊이가 있다.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수립의 필요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서 중국경제의 발전과 개혁의 심화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3. 중국의 현행 조세체계

가. 중앙세와 지방세

1994년의 세제개혁에 의해 각종 세법이 중앙세와 지방세 및 공통세로 구분되었고 기존의 지방세무국 안에 중앙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설치되어 중앙세는 중앙세무국, 지방세와 공통세는 지방세무국에서 징수하도록 되었다. 또한 관세와 함께 징수되는 소비세, 증치세는 세관에서 징수하도록 되었다.⁴⁾

(1) 중앙세

- 관세
- 소비세 (세관에서 대리징수하는 消費稅, 增值稅 포함)
- 중앙기업 기업소득세 (중앙정부가 출자하고 있는 중앙기업)
- 금융기구 기업소득세 (지방은행, 외자은행 및 은행 이외 금융기구)
- 영업세, 기업소득세, 城鄉維護건설세 (철도, 국명이 붙어 있는 전업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 등), 보험총공사)

(2) 지방세

- 중앙세를 제외한 영업세
- 기업소득세 (중앙세를 제외한 지방정부가 출자하고 있는 지방기업)
- 개인소득세
- 鄉鎮토지사용세
- 고정자산조절세
- 城鄉維護건설세 (중앙세 제외)

4) 강경규·김선화, “중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http://www.yesform.com>, 2004.

- 房産稅, 車船稅, 印花稅, 契稅, 屠宰稅, 농업세, 경지점용세, 유산세, 토지증치세, 토지사용세, 冥席稅

(3) 공통세

- 증치세 (75%는 중앙정부, 25%는 지방정부에 귀속)
- 자원세 (해양석유자원세는 중앙정부, 기타는 지방정부에 귀속)
- 증권교역세 (94%는 중앙정부, 6%는 지방정부에 귀속)

나. 조세징수관리

중국의 세무기관은 1992년에 '세수징수관리법'을 공포하면서 현재의 조세행정체계를 구비하였다. 세무징수관리법을 공포하면서 조세행정을 총괄하는 국가세무국을 국무원직속기관으로 변경하고 명칭도 국가세무총국으로 개칭하였으며, 1993년에는 재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던 국가세무총국을 재정부와 같은 등급으로 격상시켰다.

국가세무총국의 구조는 지방의 세무행정을 담당하는 성급 세무기관이 있고, 그 아래에는 직할시의 각 지구, 직할시구에 세무분국을 설치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최하위의 사무소가 있다. 한편 지구, 직할시, 자치주세무국 아래에는 자치주와 자치현, 현의 세무국 및 성할시 분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아래에 최하위 세무기관인 세무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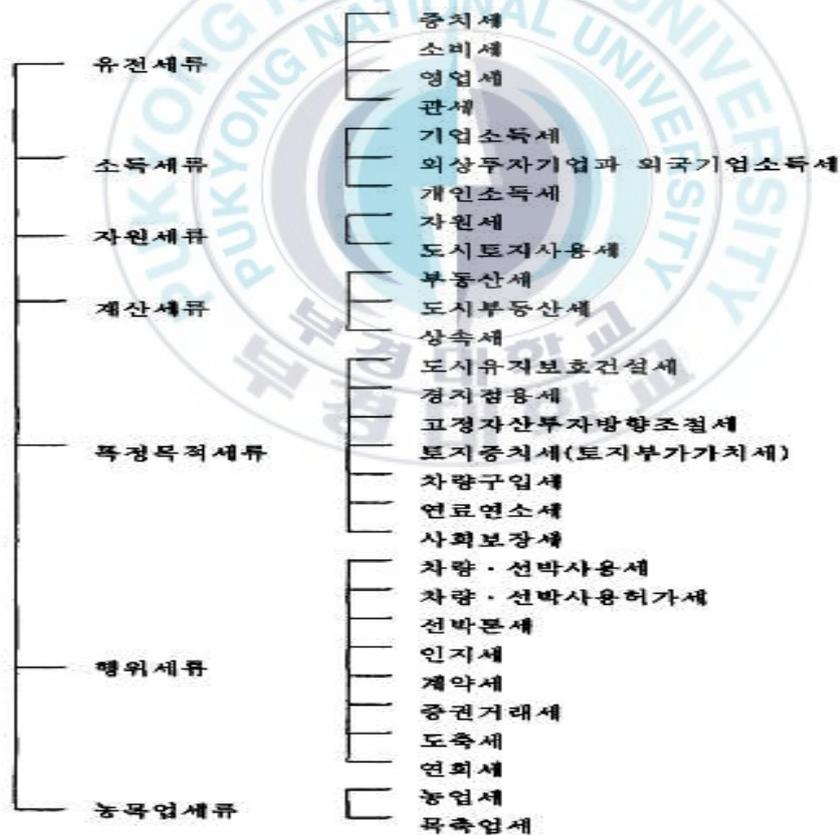
2002년 초 기준으로, 省級 세무국은 61개, 副省級 도시 세무국이 30개, 地(市·區·盟·州) 세무국이 985개, 縣(市·區·旗) 세무국 5,261개, 基層 稅務分局(所)이 35,330개가 있다. 전국 세무 관련 인원은 89만 명이며, 이 중에서 국가세무총국 소속이 49만 명, 지방세무국 소속이 40만 명이 있다. 이는 경제성장에 따른 조치이다.

국가세무총국의 조직은 10司 2局 1廳과 10개의 직속사업단위로 구성된다. 省級 (自治區와 直轄市 포함) 지방세무기관에는 지방세무국이 있으며, 7處 1室로 구성되며 지방의 세무행정을 담당한다. 관세와 선박톤세는 海關總署에서 담당하며, 국무원 직속기관이며 중국의 현행 각급 세무기구 조직도는 <표2-1>과 같다.

다. 중국의 조세체계

중국의 현행 조세제도는 1994년 세제개혁 이후 총 24개의 개별세법과 1개의 절차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된 세목은 간접세에 해당하는 증치세, 영업세, 소비세와 직접세에 해당하는 기업소득세,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 개인소득세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조세는 총 29개의 稅目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성질과 작용에 따라 <표2-2>에서 구분하는 바와 같이 7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⁵⁾

<표2-2> 중국의 세목별 조세체계



5) 강경규·김선화, 전게서, <http://www.yesform.com>

(1) 실체법 (개별세법)

(가) 유통세류(流轉稅類)

- 부가가치세(增值稅) : 재화(일부 용역)공급
- 소비세(消費稅) : 술, 담배, 고급소비재
- 영업세(營業稅) : 용역공급
- 차량구입세(車輛購置稅) : 차량구입

(나) 소득세류(所得稅類)

- 기업소득세(企業所得稅) : 법인세(내자기업)
-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 : 법인세(외자기업)
- 개인소득세(個人所得稅) : 개인소득에 대한 소득세

(다) 자원세류(資源稅類)

- 자원세(資源稅) : 광산물채취, 소금생산
- 성진토지사용세(城鎮土地使用稅) : 도시지역 토지 점유

(라) 특정목적세류(特定目的稅類)

- 도시유지보호건설세(城市維護建設稅) : 증치·소비·영업세 납세자
-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固定資產投資方向調節稅) : 징수정지
- 토지증치세(土地增值稅) : 토지사용권, 건물 양도소득
- 경지점용세(耕地占用稅) : 경지의 건축 또는 비농업사용

(마) 재산세류(財產稅類)

- 가옥세(房產稅) : 건물소유
- 도시부동산세(城市房地產稅) : 도시부동산 소유

(바) 행위세류(行爲稅類)

- 차량선박사용세(車船使用稅) : 차량·선박 보유, 사용
- 차량선박사용면허세(車船使用牌照稅) : 차량·선박 등록

- 인지세(印花稅) : 증빙, 문서, 장부의 실행
 - 도축세(屠宰稅) : 가축도살
 - 연회세(筵席稅) : 연회개최
 - 계약거래세(契稅) : 토지사용권, 건물소유권 매수자
 - (사) 농업세류(農業稅類)
 - 농업세(農業稅) : 농업수입
 - 농업특산세(農業特産稅) : 특정 농산물
 - (자) 기타
 - 교육비부가세(教育費附加) : 증치세, 영업세 납세자
- (2) 절차법
- 세수징수관리법(稅收徵收管理法)
- ※ 외자기업에 적용되는 세목
- 외상투자기업및외국기업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자원세, 토지 증치세, 인지세, 차량선박사용면허세, 도시부동산세, 도축세, 차량구입세, 개인소득세

라. 세목별 주요내용

세목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

① 流轉稅 : 增値稅, 소비세, 영업세와 관세 등 4가지 조세가 포함된다. 이런 세종은 보통 생산 · 유통 혹은 서비스영역에서 납세자가 취득한 매출 수입, 영업수입 혹은 수출입화물가격(수량)에 근거하여 징수한다.

증치세는 재화의 판매 등에 따른 부가가치 발생분에 대해 부과하는 부가

6) 강경규 · 김선화, 전계서, <http://www.yesform.com>

가치세로 재화의 판매, 가공, 수선 및 교체용역의 제공행위에 대해 과세이다. 농업(임업, 양식업, 목축업, 수산업 포함), 피임약 및 피임용구, 고서적, 과학연구 및 교육용 수입장비, 하청 가공, 하청 조립을 위해 수입되는 장비 및 기계 장애인용 수입물품, 무상지원 물자 및 장비, 사용하던 재화의 판매 재료가공 수출용 수입원자재 등은 증치세가 면제된다.

소비세는 모든 재화에 대하여 증치세 부과가 징수된 이후 소수의 재화에 선별적으로 부과되는 과세로 중국에서 과세대상 소비재를 생산, 수입하거나 위탁 가공하는 모든 기업, 단체, 개인은 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영업세는 과세대상 노무의 유상제공, 무형자산의 유상양도 및 부동산 판매로 인한 판매액에 대해 부과한다. 월 영업액 200~800元이하, 매차 영업액 50元 이하 유치원, 탁아소 등의 부양 및 양육서비스, 혼인소개, 장례서비스 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학교 등의 교육서비스 문화 및 종교활동 관련 입장료 서비스, 장애인제공 노무, 농목축업 관련 기술훈련과 질병 예방 및 치료 등과 관련된 업종은 면제받는다. 교통운수, 건축, 우편통신 및 문화체육업종 등은 3%, 금융보험과 서비스업종, 무형재산 유상양도 및 부동산판매 등은 5%, 오락업은 5~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② 所得稅 : 기업소득세,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등 3가지조세가 포함된다. 이런 세종은 생산자와 경영자가 취득한 이윤 혹은 개인이 취득한 수입에 근거하여 징수한다.

기업소득세는 내자기업소득세와 외자기업소득세로 구분되며 내자기업소득세의 납부는 연도별로 계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납할 수 있다. 월 또는 분기별 예납은 관할지방세무당국이 납세의무자의 납부세액의 다과에 따라 결정하며, 월 또는 분기 종료 후 15일 내에 예납하되 연도 종료 후 4개월 내에 합산, 정산하여 과부족을 정리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반드시 월 또는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 관할지방세무당국에 재무제표와 기업소득세

예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에 그 소재지에 있는 관할 지방세무당국에 회계결산보고서와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자기업소득세의 경우 외국투자기업 소득세의 과세근거는 납세소득액을 근거로 한다. 세법은 과세소득의 기본개념을 "외국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이 중국 내에 설립한 생산·경영기구 내지 장소에서 발생한 때 1납세연도의 수익총액에서 비용(원가, 비용 및 손실)을 차감한 잔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투자기업의 기업소득세와 외국기업의 중국 내 설립된 생산, 경영기구 및 장소의 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는 납세소득액의 30%를 과세하며, 지방소득세는 납세소득액의 3%를 과세한다. 그러나 투자우대조치로서 경감세율이 적용이 되고 진출지역, 기업의 종류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다.

개인 소득세의 경우 개인소득세법에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과세원칙을 함께 채용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에 대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주소와 거주기간에 의해 구분된다. 외국인의 거주 및 비거주자 구분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고, 주로 거주기간이 판정기준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내에서의 거주기간의 장단이 납세의무자의 개인소득세 부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두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소득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류별로 구분계산해서 납세하며, 2명 또는 2명 이상의 개인이 동일 종류의 수입을 공동으로 얻게 되는 경우에는 각자에게 과세한다.

중국 내에 주소가 있거나 주소는 없지만 1년 이상 중국 내에 거주한 개인의 중국 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과세대상이 되며 한중 이중과세방지 협정상 중국 내에 183일 이상 거주한 한국인은 중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중국에서 과세권 보유하고 있다.

③ 資源稅 : 자원세와 도시·농촌토지사용세 2가지 조세가 포함된다. 이런 세종은 자원개발 또는 도시와 농촌의 토지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 징수하는

것으로 국유자원에 대한 유상사용을 체현할 수 있다.

④ 財産稅：부동산세, 도시부동산세와 상속세가 포함된다.

⑤ 特定目的稅: 도시건설세, 경지점용세,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토지增
值稅, 차량구입세, 유류와 사회보장세 등 7가지 조세가 포함된다. 이런 세
종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정대상에 한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⑥ 行爲稅：차량선박사용세, 차량선박사용번호세, 선박톤세, 인지세, 계약
세, 증권거래세, 도축세와 연회세 등 8가지 조세가 포함된다. 이런 세종은
특정 행위에 대해 징수하는 것이다.

⑦ 農·液業稅：농업세 (농업특산세 포함)와 목축업세 2가지를 포함한다.
이런 세종은 농업수입 혹은 목축업수입을 취득한 기업과 업체 및 개인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과 개인이 상기 각종 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
다. 일반적으로 공·상업기업은 반드시 增
值稅를 납부하여야 하고, 교통운
송건축설치·금융보험서비스 등 기업은 영업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농업생
산자는 농업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수익기업은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밖에 지정소비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
산기업은 자원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부동산을 양도하는 기업은 토지增
值稅를, 기업의 생산·경영관련 장부와 체결된 각종 계약은 인지세를, 부동
산 차량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부동산세와 차량선박사용세를, 공민
개인이 취득한 수입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세법의 규정에 근거
하여 일부 납세자는 일정한 면세·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이외에도 국가의 규정에 의해 과세당국에서 통일적으로 징수하는 非조세항
목의 재정수입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즉 教育費附加, 鑛區使用費와 文化事業建
設費이다. 한편 省級 인민정부는 과세당국에서 사회보험비용을 징수하도록 규정
할 수 있다. 현재는 기본 養老保險費, 醫療保險費와 失業保險費 3개 항목이 있다.

Ⅲ. 향후 중국의 조세제도 운영방향

1. 대중국 투자동향

2003년 1~12월 중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액이 44.9억 달러를 기록하여 2002년보다 65.1%가 증가, 2003년 1~12월중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 총액이 535.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1.4% 증가하는데 그쳤음을 감안할 때 한국 기업의 대중국 진출 열기가 매우 두드러지는 양상을 띄고 있다. 2003년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액이 격증하면서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규모가 홍콩과 일본에 이어 3위를 기록, 2002년도 5위에서 미국과 대만을 제치고 홍콩(177.0억 달러), 일본(50.5억 달러)에 이어 3위로 상승하였다. 이에 반해 미국과 대만은 2002년 각각 2위와 4위에서 4위와 5위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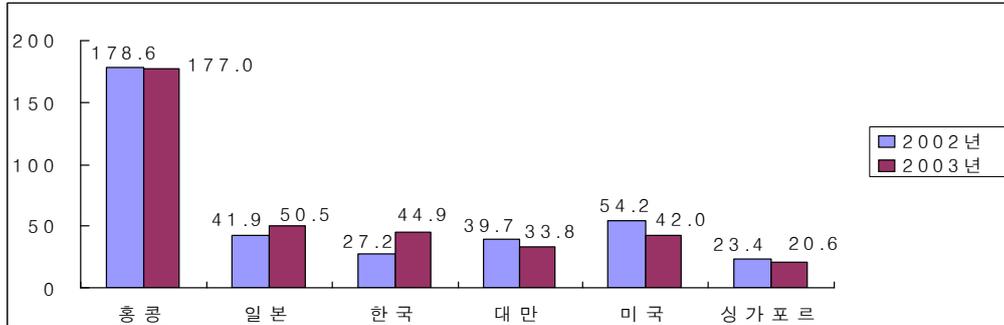
미국의 대중국 투자액은 2002년도에 54.2억 달러에 달해 같은 해 한국의 2배에 달했지만 2003년도에는 한국에 추월당하였다. 조세회피지역을 통한 대중국 투자도 2003년도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만은 2002년에 한국보다 10억 달러이상 많은 4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03년에는 같은 금액만큼 한국이 앞섰다.

2003년 중 일본과의 격차도 5.6억 달러에 불과하여 향후 추월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며 국가별 대중국 직접투자 규모는 <도표3-1>과 같다.⁷⁾

7)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동북아팀 특별이슈보고, 2004.1.10.

<도표3-1> 국가별 대중국 직접투자 규모

(단위 :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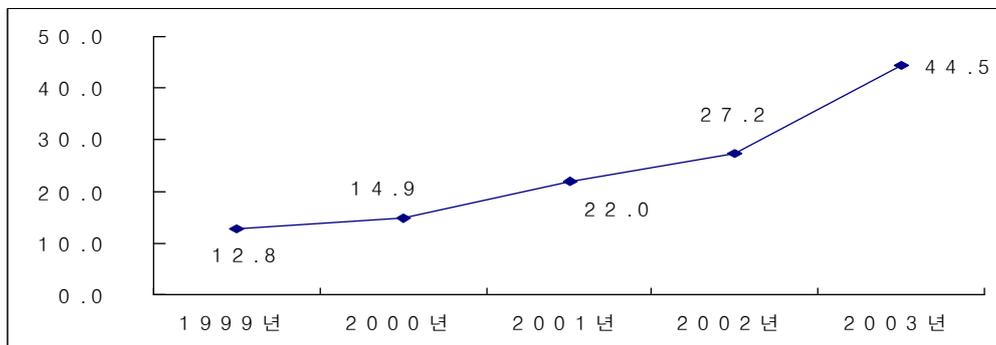


※ 자료 : 중국 상무부 (2004), www.mofcom.gov.cn

이처럼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액이 IMF이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중국 투자액이 1999년 12.8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 22.0억 달러로 증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40억 달러대에 처음으로 진입하여 최근 4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더욱이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80%이상이 제조업인 반면 여타 국가의 그 비중은 50%대에 불과하며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추이를 살펴보면 <도표3-2>와 같다.

<도표3-2>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추이

(단위: 억 달러)



※ 자료 : 중국 상무부 (2004), www.mofcom.gov.cn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2002년 6월 사스(SARS)사태가 진정되면서 70억 달러에 육박했으나 그 이후(12월에만 63.5억 달러) 매월 30억 달러 선으로 감소, 60%이상 증가한 우리기업들의 투자패턴과 대조적이며, 한국기업의 투자가 중국전체 외국인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5.2%에서 지난해 8.3%로 상승하였다.

【 한국과 전세계의 월평균 대중국 투자 】

- 전세계 : 44.0억 달러(2002년) ⇒ 44.6억 달러(2003년, 0.6%↑)
- 한국 : 2.3억 달러(2002년) ⇒ 3.7억 달러(2003년, 60.9%↑)

결론적으로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증가는 세계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선점의미가 있는 반면 우리 제조업의 공동화를 야기하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 2004년 들어 중국경기 둔화론이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 치밀한 사전준비와 리스크 관리에 힘쓰는 등 신중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표3-1> 국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신고기준)

(단위: 건, 백만불)

| 구 분 | 2003 | | 2004 | | 2005 | | 누 계 (‘68~’05)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아시아 | 2,282 | 4,319 | 2,845 | 5,160 | 3,037 | 5,356 | 22,174 | 42,775 |
| 중 국 | 1,838 | 2,807 | 2,247 | 3,681 | 2,265 | 3,502 | 15,510 | 21,473 |
| 인도네시아 | 33 | 215 | 52 | 65 | 86 | 131 | 844 | 4,549 |
| 홍 콩 | 75 | 129 | 92 | 318 | 69 | 473 | 833 | 3,213 |
| 베트남 | 102 | 723 | 126 | 358 | 175 | 353 | 855 | 3,178 |
| 인 도 | 10 | 21 | 29 | 49 | 32 | 113 | 206 | 1,500 |
| 싱가포르 | 13 | 203 | 17 | 156 | 22 | 133 | 219 | 1,403 |
| 필리핀 | 20 | 17 | 35 | 24 | 53 | 75 | 954 | 1,118 |
| 일 본 | 67 | 52 | 112 | 320 | 137 | 209 | 987 | 1,525 |
| 태 국 | 48 | 53 | 48 | 60 | 39 | 67 | 414 | 973 |
| 말레이시아 | 21 | 11 | 19 | 35 | 29 | 23 | 388 | 784 |
| 기 타 | 55 | 89 | 68 | 94 | 130 | 277 | 964 | 3,058 |
| 북 미 | 614 | 816 | 874 | 1,463 | 1,124 | 1,448 | 6,547 | 20,216 |
| 미 국 | 589 | 780 | 841 | 1,421 | 1,094 | 1,404 | 6,262 | 18,556 |
| 캐나다 | 25 | 36 | 33 | 42 | 30 | 44 | 285 | 1,659 |
| E U | 45 | 229 | 65 | 751 | 117 | 680 | 808 | 9,167 |
| 영 국 | 4 | 126 | 12 | 313 | 22 | 93 | 175 | 2,661 |
| 독 일 | 14 | 28 | 17 | 206 | 16 | 40 | 245 | 1,430 |
| 프랑스 | 5 | 13 | 7 | 40 | 11 | 27 | 93 | 642 |
| 네덜란드 | 3 | 2 | 10 | 4 | 11 | 41 | 87 | 2,718 |
| 기 타 | 19 | 60 | 19 | 188 | 57 | 479 | 208 | 1,716 |
| 중남미 | 35 | 190 | 29 | 340 | 46 | 896 | 731 | 6,424 |
| 멕시코 | 7 | 27 | 7 | 37 | 10 | 86 | 120 | 546 |
| 브라질 | 5 | 8 | 1 | 23 | 14 | 217 | 68 | 917 |
| 버뮤다 | 2 | 2 | 0 | 0 | 0 | 408 | 12 | 1,959 |
| 아르헨티나 | 0 | 14 | 0 | 0 | 0 | 0 | 48 | 341 |
| 페 루 | 1 | 36 | 0 | 41 | 1 | 114 | 23 | 705 |
| 기 타 | 20 | 103 | 21 | 239 | 21 | 72 | 460 | 1,957 |
| 기타지역 | 109 | 358 | 114 | 347 | 148 | 662 | 1,734 | 9,493 |
| 전 체 | 3,085 | 5,912 | 3,927 | 8,061 | 4,472 | 9,042 | 31,994 | 88,075 |

※ 자료 : 재정경제부 (2006), '05년도 해외직접투자동향

2. 현행 중국 조세제도의 문제점

중국의 주된 세목의 종류와 세액계산 방법에 있어서 한국과 유사하다. 그러나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영향으로 조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한국과 큰 차이점이 있으며, 한국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⁸⁾

가. 정책성이 강함

중국은 조세를 경제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의 현행 세제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하여 세율이 높고, 정책적인 목적으로 조세감면이 많은 기형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나, 중국은 환급률을 사용하여 거시경제지표를 조정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조세부담률의 현실상황은 조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나 재정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기금과 비용이 정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1998년의 중앙재정예산을 예로 들면 조세·기금·국채 등 3개 종목의 수입이 합계 9,160.5억 위안이며 그중 조세수입은 50.5%밖에 차지하지 못하였다.

둘째, 비용징수부문과 비용항목이 너무 많다. 통계에 근거하면 1997년까지 국가에서 비준한 행정사업 비용항목에는 371개가 있었다.

셋째, 마음대로 비용을 징수하고 마음대로 벌금을 부과하며 징수한 비용과

8) 최강식, “중국 현행 조세제도”, 국세청 국외훈련보고서, pp.3-4.

강경규·최선화, 전게서, <http://www.yesform.com>

별금을 자의적으로 지출하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넷째, 비용정수를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화시킨다. 중국의 최근 몇 년의 조세부담률은 10%-11%로서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조세의 기금과 비용으로 인한 수입은 GDP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이로부터 납세자의 전체적 조세부담률은 GDP의 2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켰다.

다섯째, 과도한 기금과 비용은 분배질서를 크게 교란하고 조세기반을 약화시켰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재정수입을 잠식하였고 국가, 특히 중앙정부의 재산 소유권을 약화시켰다.

나. 과중한 간접세율

1994년의 세제개혁은 조세수입의 증대만을 고려한 나머지 조세구조상 간접세의 비중을 크게 하였다. 流轉稅중에서 增値稅, 소비세, 영업세는 총 조세수입의 70%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그중에서도 增値稅는 약 5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경기조절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사용될 수 있는 직접세의 비중은 28%에서 18%로 하락하였으며, 그중 개인소득세는 3.2%밖에 차지하지 못하였다. 2002년의 통계를 보더라도 총 조세수입 1조 7,004억 위안에서 流轉稅에 속하는 增値稅, 소비세, 영업세의 비중은 약 58%였으며 그중 增値稅 한 가지 세종만 총 조세수입의 37%를 차지했다. 이런 구성은 조세의 징수관리를 간소화하고 재정수입을 보증하는 데는 일정한 역할을 하지만 조세의 거시적 조절역할은 오히려 약화시킨다.

다. 세목의 중복과 복잡한 세율구조

중국의 세제는 부단히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세목의 중복과 결여문제가 존재한다. 예컨대, 增値稅와 영업세는 병렬된 세목으로 징수범위 상 교차되고 중복되는 문제가 있으며, 또한 일부 업종을 아직 增値稅의 과세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징수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소비세는 11개 제품에 대해서만 징수함으로 대상이 적고 세목이 많으며,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는 이중과세가 존재하여 조세회피의 발미를 제공하고 있다. 기업소득세는 명목세율이 높은 편이고 혜택이 너무 많아 분포가 불합리하고 지방세체계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등등 미흡한 점이 많다.

1994년의 조세개혁은 增値稅 세율을 17%와 13%로 나누고 수출상품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였다. 또한 소규모 납세자·면세 농산품·폐기물경영자에 대해 각각 다른 공제세율을 적용하였다. 그 후 경제발전이 부응하여 두 차례 增値稅 세율을 조정하였다. 현재 중국의 增値稅세율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바 공제세율은 3개 등급에서 6개 등급으로 증가하였으며 저세율 제품범위도 부단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표3-2>는 3개 등급으로 구분된 增値稅세율의 분류를 보여주고 있다.

<표3-2> 증치세율

| | | |
|------|-----|--|
| 기본세율 | 0% | 물품 수출시 |
| | 13% | 곡물, 식용유, 수도, 난방, 냉방, 액화석유, 천연메탄가스, 도서, 신문, 잡지,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농업용 비닐 |
| | 17% | 나머지 모든 재화 및 용역 |
| 환급율 | 5% | 농산물 |
| | 13% | 농업용 기계, 운동용구, 시계, 고무제품, 신발, 도자기, 유기·무기화학, 원료, 염료, 도료, 안료, 강재, 시멘트, 알루미늄, 납, 아연 등 |
| | 15% | 방직품 원·부자재, 17%로 환급하지 않는 기타 기계류 등 |
| | 16% | 선박 |
| | 17% | 의류, 기계설비, 전기·전자제품, 운송기기, 계측기기 등 |

※ 자료 : 중국대외경제무역협작부 (2002), www.moftec.gov.cn

라. 법규성 미약

세법은 국가 법률의 중요한 부분으로, 조세입법은 반드시 고도의 투명성과 권위성을 갖추어야 하며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진보와도 긴밀히 연관되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세법은 미비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조세징수관리법》,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 《개인소득세법》이 정식 입법을 거쳤을 뿐 기타 법규는 여전히 행정법규의 단계에 놓여있다.

과거 중국행정은 비밀행정 또는 서랍행정이라고 불리어 졌다. 정부기관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랍 속에 있는 내부 문서에 따라 집행했다. 그 문서의 내용은 국민이 알 리가 없었다.

지금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일반에게 모두 공개하나 아직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법에 의한 행정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중국세법은 형식적으로 법(법률), 잠정조례(명령), 실시세칙(시행령)이 존재하나, 실제 조세행정의 대부분은 한국의 예규통첩에 해당하는 통지(通知, 알림)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중국의 통지는 행정기관의 법규해석에 해당하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이 필요한 때마다 수시로 통보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권리와 세법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침해된다.

조세감사제도는 조세제도의 실현을 보증하는 관건이다. 비록 중국에서도 사회의 조세협조와 조세보호의 네트워크건설을 중시하지만 입법의 각도에서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개인 신용제도가 아직 구축되지 않고 은행결제전산화가 낙후하여 개인수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장경제하에서 세무대리는 필수적이며 조세관리의 효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외부환경이다. 중국의 세무대리 시장규모는 여전히 협소하고 세무대리행위는 극히 비정규적이며 세무대리인의 자질도 대리업무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

마. 형식주의에 의한 과세

한국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실질과세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으나 중국은 상대적으로 계산서와 장부에 따른 형식주의 과세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조사시 거래의 진실여부보다는 세법에서 규정한 계산서를 사용하였는지, 필요한 사전승인 절차를 거쳤는지에 중점을 둔다. 만약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규정된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 소득세법상 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다. 오랫동안 중국의 조세계획은 GDP의 발전변화에 근거하여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당기 추정액을 확정하였다. 이런 계획지표는 경제발전의 실제상황과 너무 많은 편차가 있다. 심사업무 역시 조세계획의 완성상황에 근거하여 평가했으며 세법의 집행과 징수관리의 품질상황을 심사업무의 중요한 표준으로 삼지 않고 있다.

조세제도와 조세정책이 거시적 경기조절에 대한 기능은 조세징수관리의 유효성에 의해 결정된다. 한편 조세징수관리의 유효성은 정보화기술의 운용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정보화기술은 세무당국의 稅源에 대한 엄밀한 제어와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조세정보화 건설은 비교적 낙후하다.

바. 관리 중시

중국 세무당국은 세원 및 납세자 관리를 중요시한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예외에 의한 세원관리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중국은 전면적인 세원관리방식

을 취하고 있다.

중국이 관리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형식주의에 의한 세무행정을 원활히 집행하기 위해서이다. 예로 중국의 계산서는 세무기관이 통일적으로 인쇄하여 판매하며, 사용한 후에도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각종 비용공제와 조세감면사항은 공제와 감면 전에 세무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사. 조세부담의 불공평성

조세부담 공평은 각 국가가 각 시기에 조세정책을 제정함에 있어서의 기본 요구와 준칙의 하나이다. 여기에는 조세의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성이 포괄된다. 중국의 현행 조세제도와 조세정책은 사회주의시장경제 도입 시 형성된 것으로 당시에도 불공평한 조세부담이 존재하였으나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았다. 시장경제가 점차 성숙되어 가고 대외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거시적 경제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조세는 이에 상응한 조정을 진행하지 않아 불공평의 모순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초기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대하여 각각 다른 기업소득세법을 실행하였다. 이 두 가지 기업소득세는 적용세율, 공제범위와 세금계산표준, 특히 조세혜택 등에 있어서 서로 달랐다. 하여 내·외자기업소득세의 명의세율은 33%로 동일하지만 외자기업이 여러 조세혜택을 받음으로 인하여 외자기업의 실제 조세부담은 8%-9%로서 내자기업소득세율의 1/3도 안되었다. 이는 기업의 평등한 경쟁에 영향을 주며, 조세의 통일과 공평성을 파괴함으로써 조세수입의 대량 유실을 초래하게 된다.

중국은 산업지간의 조세부담이 불공평하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제1산업의

조세부담은 좀 상승하였으나 제2산업의 조세부담은 조금 하강하였으며 제3 산업의 조세부담은 뚜렷이 하강하였다. 그밖에 산업내부의 각 업종기간의 조세부담도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다. 업종별 기업소득세 감면 및 면제 현황은 <표3-3>와 같다

<표3-3> 업종별 기업소득세 우대내용

| 업종별 | 감면기간 |
|---|---|
| 1. 생산활동 종사기업(기본 감면기간) | -1~2년: 면제 -3~5년: 50% 감면 |
| 2. 첨단기술기업 (계속적인 정부인가 필요) | -1~2년: 면제 -3~5년: 50% 감면 -6~8년: 50% 감면 |
| 3. 수출기업(생산제품 70% 이상 수출) | " |
| 4. 비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 500만 달러, 금융기관 1,000만 달러 이상 (단 서비스업 제외) | -1년: 면제 -2~3년: 50% 감면 |
| 5. 항구·부두 건설기업(경영기간 15년 이상 기업) | -1~5년: 면제 -6~10년: 50% 감면 |
| 6. 농업·임업·목축업 종사기업 및 낙후된 변경지 역 투자기업 | -1~2년: 면제 -3~5년: 50% 감면 -향후 10년 이내에서 관계기관 인가 후 15~30% 감면 |

※ 자료 : 중국대외경제무역협작부 (2002), www.moftec.gov.cn

중국 동부지역의 GDP 총액과 일인당 GDP는 중·서부지역에 비해 높지만 조세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이는 주로 중국 현행 생산형 增値稅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산형 增値稅는 기업에서 구입한 고정자산에 포함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유기구조가 높을수록 기업의 조세부담이 높다. 외부구입 원자재가 비교적 적은 기초산업의 조세부담은 외부구입 원자재가 비교적 많고 공제율이 높은 일반 가공공업과 상업에 비해

중하다. 서부지구는 광산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구매·사용하는 부문에 자원세를 전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광산기업 자체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킨다. 개발구별 기업소득세 부담비율은 <표3-4>와 같다.

<표3-4> 개발구별 기업소득세 우대내용

(단위: %)

| 구 분 | 전국 공통 | 경제 특구 | 국 가 급 | | | 개방도시 및 지역(沿海, 沿江, 內陸, 邊境), 省급 경제기술개발구 |
|--|----------|----------|-----------------|-------------|-----------------|--|
| | | | 경제 기술 개발구 | 보 세 구 | 변경 경제 합작구 | |
| 1.생산활동 종사기업 | 30 | 15 | 15 | 15 | 24 | 24 |
| 2.비생산활동 종사기업 | 30 | 15 | 30 | 30 | 30 | 30 |
| ①지식·기술집약 사업 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3,000만 달러 이상이며 투자회임기간이 장기인 사업 | 30 | 15 | 15 | 15 | 15 | 15 |
| 3. ②에너지·교통·항구 사 특 업 및 국가가 특별히 인가 정 한 장려사업 | 15 | 15 | 15 | 15 | 15 | 15 |
| 산 ③규정에 의한 우대기간 업 만료 후 생산제품 70% 이상 수출기업 | 15 | 10 | 10 | 10 | 12 | 12 |
| ④금융기관으로 외국인투자 금액이 1,000만 달러 이상 이며 사업기간 10년 이상 인 경우 | 30 | 15 | 15 | 15 | 15 | 15 |
| 4.지방소득세 | 3 | 1.5 | 1.5 | 1.5 | 2.4 | 2.4 |

※ 자료 : 중국대외경제무역합작부 (2002), www.moftec.gov.cn

또한 개인별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의 대표적인 경우가 중국의 현행 개인소득세과세유형은 전형적인 분류소득과세이다. 이는 납세자의 각종 소득을 세

법규정에 따라 분류하고 각종 수입의 적용세율에 따라 각각 과세하는 것이다. 이런 과세유형은 납세자의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며 과세효율과 경제효율을 저하시킨다.

현행 개인소득세는 “임금·봉급소득”항목에 대해 “정액공제법”을 채용하여 납세자의 생계비용을 계산한다. 정액공제법은 비록 간단하고 세원을 포착하기 쉬운 장점은 있지만 물가지수를 고려하지 않은 점과 부동산 납세자의 가정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등 단점이 있다. 세율구조 또한 불합리하다. 중국 현행 개인소득세가 적용하는 초과액누진세율은 누진등급이 너무 많아(<표 3-5>참조) 계산상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입 차이를 조절하는데 불리하다. 개인소득세 한계효율은 45%로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실행하는 한계효율보다 높다. 이는 근로소득을 우대하는데 불리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탈세를 초래할 수 있다.

<표3-5> 개인소득세율

| 구분 | 연간 과세대상 소득 | 소득세율 |
|----|--------------------------|------|
| 1 | 500위안 이하 | 5% |
| 2 | 500위안 초과 2,000위안 이하 | 10% |
| 3 | 2,000위안 초과 5,000위안 이하 | 15% |
| 4 | 5,000위안 초과 20,000위안 이하 | 20% |
| 5 | 20,000위안 초과 40,000위안 이하 | 25% |
| 6 | 40,000위안 초과 60,000위안 이하 | 30% |
| 7 | 60,000위안 초과 80,000위안 이하 | 35% |
| 8 | 80,000위안 초과 100,000위안 이하 | 40% |
| 9 | 100,000위안 초과 | 45% |

※ 자료 : 중국대외경제무역협작부 (2002), www.moftec.gov.cn

3. 향후 중국의 세정운영 방향

가. 외국기업 세금혜택 축소

외자도입의 필요성에 의하여 초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조세정책 기조를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외자유치가 만족할 만큼 이루어진 경우 그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였다. 물론 중국도 예외가 아닐 수 없으며 문제는 그러한 움직임이 최근 들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⁹⁾

중국의 현행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소득세법'에서는 외자유치와 선진 기술 및 설비의 도입에 유리하게 하고 중국의 경제발전과 투자를 고무하기 위해 지역별·업종별·다각적 조세우대조치를 두고 있다.

특히 외상투자자가 경영활동을 통해 취득한 이윤을 중국에서 재투자하는 것을 고무하기 위해 '재투자환급제도'를 규정하고 있어 기업소득세액 등을 환급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외자기업소득세제 분리실시에 따라 과세베이스, 소득세율, 조세우대정책 등이 불일치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시장경제에 내재돼 있는 공평경쟁원칙에 위배되고 경제효율을 제고하는데 불리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자국기업과 외상기업과의 역차별을 내세워 외상기업에 대한 조세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자국기업들의 주장이 점점 더 설득력을 더해 간다는 것이다. 특히 투자우대제도 철폐는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선 현실적 여건이 잘 돼

9) 조세일보, "외투기업 조세우대제도 점진적 폐지·단순화", 2005.9.1.
연합인포맥스, "中 외국기업 세금혜택 철폐 전망(Wsj)", 2007.1.26.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하면서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외국
인투자기업에 대한 과세를 먼저 낮은 세율로 시작해서 수입금액을 노출시
켜 파악한 후 점차 세율을 늘려 가면 충분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내·외자기업의 소득세제를 통합해 조세우대정책을 통일
시행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나. 고수입 업종 세원관리 강화

자본과 고급인력이 국경 없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 짐에 따라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국도 고수입 업종 및 직종
에 대한 세원관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즉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
려고 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본가와 고급 전문인력은 고소득층에 속하는데,
이들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먼저 외자기업 등 10개 고수입 업종과 연예인 등 9개 직종
을 선정하여 자진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유도하고 이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¹⁰⁾

직업별로는 연예인, 모델, 운동선수 등 유명인사와 문예, 체육, 경제활동,
중개인, 의사, 주식평가사, 관광가이드 등 전문 자유직종, 변호사, 사기업
고위간부 및 기업투자자, 기업임대 및 자재공급업자, 건축 하청업자, 기업
관리자 및 임원, 지방 향진 서기 및 향진장 등이 포함된다.

업종별로는 모든 외자기업과 외국기업의 중국 지점, 지사가 포함되며 변
호사, 회계사 사무소 및 경매업, 부동산중개 등 중개업, 첨단기술 및 소프

10) 연합뉴스, “中 19개 고수입 업종·직종에 조세관리 강화”, 2006.7.13.

트웨어 기업, 통신, 금융, 보험, 항공, 철도, 담배기업, 축구클럽 및 골프장, 호텔 등 위락업, 설계사 사무소, 과학연구소, 학교, 의료기관, 방송, 신문사, 주식회사 및 상장기업, 각급 국가기관, 사회단체 등이 들어간다.

명목상으로는 19개의 직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고소득 전문직종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국내기업이 제조업 위주로 진출하고 있어 직업별·업종별 고소득 전문 직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연예인, 축구선수, 골프장, 금융, 보험, 법률, 회계서비스업 등은 앞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많은 분야로 중국 과세당국의 이러한 조세정책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 조세회피 공조 강화

다국적기업은 대개 취급하는 품목이 세계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그룹 내 관계기업간의 가격조작이 용이하고, 또한 각 국의 조세문제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유리하게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들 기업은 일반적으로 세무대책을 수립할 때 소득 및 비용의 국제적 안분을 통한 세후 순소득의 극대화를 지향하는데, 이를 위한 방법으로 다국적기업내 관계 기업간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고세율국의 소득은 감소시키고 저세율국의 소득을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다.

국내기업들도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넓은 시장을 좇아 가장 많이 진출한 나라로 중국에 진출한 현지법인과 국내기업간의 특수관계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들 간의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여 과세소득을 국내로 이전시키는 이전가격 과세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 과세당국이 OECD 조세관련 최고 책임자들이 함께 모여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국내외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통하여 소득을 이전시키는 이전가격 과세(Transfer Pricing)와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저세율 또는 무세율 국가에 해외 현지법인을 두고 조세를 회피하는 조세피난처(Tax Haven)세제 및 국외 현지법인에 자금을 조달할 때 출자의 형식(equity capital)보다는 차입금의 형식(debt capital)을 더 선호한 결과 중국내 현지법인의 과세소득 감소로 조세수입이 일실됨은 물론 차입금에 대한 이자형태로 인위적으로 중국내 국부가 국외 모회사로 유출되는 과세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세공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¹¹⁾

특히 중국 세정당국의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은 유럽 및 일본투자기업이 중국의 세법을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 홍콩, 대만투자기업은 잘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투자기업에 대한 중국 과세당국의 이러한 시각은 고의적인 매출누락 등의 탈세에도 일부 원인이 있으나, 대부분 중국 세정 및 세제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기인한다.

라. 세금징수 강화

2004년 3월에 발표된 國稅發 27호에 의하면, 중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2004년 6월말 이전까지 외국인이 이전연도의 미납부세금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및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면정책을 발표하였다.

11) SBS TV, “OECD 국제청장회의에서 조세회피공조 강화”, 2006.9.15.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과 한국 및 중국의 조세협약에 따르면 중국내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은 중국내의 거주기간이 만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몇 개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중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중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중국의 세무당국에 합산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18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국내의 소득세에 대하여 지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중국내의 회사가 지급하던 혹은 중국외의 회사가 지급하던) 불문하고 중국내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각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국내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의 경우 중국내에서 급여를 수령하는 것과는 별도로 한국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중국내에서 근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중국내 원천소득이라고 인정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국에서 수령하는 급여와 한국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중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실제 많은 기업들이 중국내에서 받는 급여에 대해서만 중국세무당국에 신고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중국내의 외국인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이 월 4천인민폐인 것을 고려하여 중국내에서 지급되는 월급여를 4천인민폐로 책정하여 중국내에서 개인소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國稅發 27호는 이러한 중국내의 개인소득세 납부회피 현상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사면기간을 두어 자발적인 세무신고를 유도한 후 기간이 종료된 후 개인소득세에 대한 감사를 통해 세금징수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발표되었다.¹²⁾

또한 세무징수강화의 일환으로 2004년도에 발표된 국가세무국의 통지문 중 하나는 2004년 6월달에 발표된 국세발 70호 '세금탈세 방지를 위한 국가세무당국의 통지'를 들 수 있다.

이 통지문에서는 세금탈세행위에 대하여,

12) 한국무역협회, “최근 중국의 세법정책 동향과 대응책”, 북경대표처, 2005.3.22.

첫째. 세금탈세 방지업무와 기타 징수관리 업무의 연계와 협조의 강화를 통해 세금탈세 방지업무 강화

둘째. 세금탈세방지 업무절차를 규범화하고 세금탈세방지 업무절차의 지속적인 개선

셋째. 각종 정보를 정리 결합하고 세금탈세 방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넷째. 세금탈세의 새로운 유형 및 이를 방지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중국내의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연합검사 제고의 보강

다섯째. 세금탈세 방지업무 종사자의 교육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세무당국은 재정수입의 감소 방지책의 일환으로 세금징수 권한을 꾸준히 강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마. 조세제도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1) 조세행정의 강화

조세행정은 조세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조세제도를 위한 법규를 도입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러한 조세가 현실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세행정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것이다.

중국은 1994년 세계개혁과 동시에 보편적인 납세신고 제도를 건립하였고 세무대리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징수관리의 전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엄격한 세무조사제도를 건립하였으며 분세제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세무기기(복선제의 세무기구)를 건립을 통해서 중국의 조세행정은 진일보하였다.

성실납세에 대한 사회 환경의 조성 및 세무담당자의 업무능력 제고 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세무정보의 전산화를 위해서

금세공정(金稅工程)이라는 국가중점 정보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제1단계에서는 주로 허위세금계산서 적발을 목적으로 증치세 세금계산서의 상호대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제2단계에서는 중국세무행정정보시스템(China Tax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 CTAIS)개발에 중점을 두고 조세징수업무의 전반적인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2) 세무행정 절차의 간소화

중국의 행정절차는 많은 부분들이 사전허가제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는 자국 산업의 보호와 오랫동안 계획경제하에 기초한 정책집행의 영향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허가제도는 외상투자기업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승인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국무원은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의 일환으로 2004년 國稅發 16호에 ‘행정심사항목에 대한 제3차 취소 및 조정 관련 국무원의 결정’을 발표하였다.

이 통지문에 의해 세무행정에서도 많은 항목들이 사전허가항목에서 제외되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개인소득세 관련 항목
 - 외국인납세자가 한 개 지역을 정하여 개인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심사비준 취소
 - 외국인 주택, 식대 등 수당에 대해 개인소득세 면제 심사비준 취소
 - 외국인이 중국주재기간에 취득한 중국에 오기전의 급여소득분에 대한 면제 심사비준 취소
 - 개인이 구입한 주식 등 유가증권의 분할납세 심사비준 취소
- 기업소득세 관련 항목
 - 법인을 구성하지 않은 중외합작경영기업의 기업소득세 합병계산 납부

에 대한 심사비준 취소

-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대한 심사비준 취소
- 대손충당금 심사비준 취소후의 후속관리
- 외국기업이 인출하는 본사관리비 세전비용 인정 심사비준 취소
- 외국석유공사 계약구역지간의 탐사비 이월 심사비준 취소
- 중외합자 하이테크기업 정기감면세 심사비준 취소
- 기업 대출이자 세전비용 인정 심사비준 취소
- 중고 고정자산에 대해 잔여사용연수로 감가상각 계산 심사비준 취소
- 재고자산평가방법 심사비준 취소
- 재산손실 세전 공제 심사비준 취소
- 외국기업 대표기구의 경비지출에 의한 환산수입으로 세금계산정수 심사비준 취소
- 영업세 관련 항목
- 외국기업과 외국인이 중국경내에 기술 양도로 취득한 소득에 대해 영업세 면제 심사비준 취소

이러한 조치는 행정절차가 사전허가제에 근거한 관리에서 신고제에 기초한 관리로의 전환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읽어 볼 수 있다. 비록, 이러한 국무원의 여러 가지 사전허가절차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국가세무총국이 2004년 6월 國稅發 80호 ‘세무행정심사항목 취소 및 권한이양후의 후속관리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의 발표를 통해 사전허가제 취소로 인한 세무총국의 통제권을 사후관리라는 형식에 의해 유지하려고 하고 있으나, 세무행정의 기초가 과거 사람에 의한 관리에서 점점 법규 및 규정을 통한 관리로 변화하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3) 이전가격 사전 합의제도 시행세칙 발표

이전가격에 의한 세무조정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로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Advanced Price Arrangement : APA)를 이용할 수 있다. 예전에도 중국은 중국내 다국적 기업들 간의 이전가격사전합의를 1998년 4월에 발표한 國稅發 59호 ‘관련기업간 업무거래 세무관리규정’ 제48조에 근거하여 실시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절차 및 서류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각 지방세무당국의 자의적인 처리에 따라 이전가격 해당기간이나 처리기간 및 이익률의 결정방법 등이 상이하게 운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전가격 사전합의에 대한 통일된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은 2004년 9월에 國稅發 118호 ‘연관기업간 업무왕래 예약정가실시규칙’을 발표하였다.

이 통지문은 모두 8장 제3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제1장 일반원칙부터 시작하여 사전협의, 공식신청, 조사와 평가, 협상, 체결, 시행 및 사후관리, 제8장인 부속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통지문의 시행으로 앞으로 이전가격사전합의 시행에 대한 투명성을 더할 것은 명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의 규정화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의 세무행정절차는 점점 투명화 될 것이며 이는 납세자의 세무처리에 편리성을 가져다주는 반면 납세자에게 세무처리의 합법성 및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4) 세법체계의 국제화 및 단일화

(가) 동북지역 증치세제 개혁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은 기업간의 비교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국가간의 통일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세법은 국가의 경제계획 및 산업장려정책과 맞물려 있어 국가간의 통일성 및 보편타당성보다는 각 국가의 세무행정 체계 및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국가마다 상이한

세법의 체계를 가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예를 들면, 중국내에서 외국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중국기업에 비하여 외자기업에 세제혜택을 많이 부여하고 있다든지 혹은 산업의 분류에 따라 증치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것은 세법의 이러한 특성에 기인한다.

하지만, 국제간의 거래가 빈번한 현재는 각 국의 특수성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국제적인 기준과 너무 상이한 세법체계는 국가간의 세수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국제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세제의 기본개념은 통일되는 것으로 가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항목은 증치세의 세제개편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증치세는 거래세의 일종으로써 생산형태(Production Type)세제의 도입을 거쳐 소비형태(Consumption Type)세제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중국의 증치세 세제형태는 생산활동에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원자재 등의 구매에 대한 매입증치세만 매출증치세에서 공제하고 고정자산 등과 같은 자본재의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은 생산형태 증치세 세제를 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에서와는 달리 고정자산 구입에 따른 증치세가 매출증치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여 기업에 추가적인 원가부담을 주었다. 하지만 2004년 9월에 발표된 財稅 156호 ‘동북지역 증치세 공제범위 확대 약간문제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고정자산에 부과된 증치세에 대해서도 제한된 지역과 제한된 업종에 한하여 매출증치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대상지역 : 동북 3성 (흑룡강성, 요녕성, 길림성)
- ▶ 대상업종 : 6개 업종 (장비제조업, 석유화학업, 야금업, 선박제조업, 자동차제조업 및 농산물가공업)

- ▶ 공제가능 매입세액 : 고정자산 매입, 고정자산 자체제조에 사용한 구입 화물 또는 과세용역, 금융리스방식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으로 임대측이 증치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고정자산을 위해 지급한 운임

상기의 규정이 비록 제한된 지역과 업종에 대해서만 실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가 조만간 이러한 제도의 전국적인 실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나) 기업소득세제 개정

중국세법체계의 국제화기준 부합의 연속선상 및 중국내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한 상이한 법률체계에 의한 내자기업의 역차별 문제제기에 따라 중국은 조만간 내자기업에 적용되던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와 외자기업에 대해 적용되던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소득세법’ 을 통합하여 단일법률 체계로 개혁할 예정이다. 내·외자기업의 단일세제를 포함한 기업소득세제 개혁에 대해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기업소득세율은 33% 세율에서 24%~28%의 세율로 인하할 것을 예측
- ▶ 지역우대정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일정기간 세금 우대조항은 폐지 및 축소될 것으로 예측
- ▶ 고도신기술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별 세제혜택은 계속 유효할 것으로 예측
- ▶ 기존의 세제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기업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폐지될 것으로 예측

향후의 세제개혁은 1994년도의 공상세제의 개혁이후 가장 큰 세제개혁이 될 것이며 이에 따른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¹³⁾

13) 한국무역협회 북경대표처, 전게서, 2005.3.22.

IV. 중국 조세제도 변화가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

1.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가. 설문조사 개요

(1) 설문대상

중국에 현지기업(연락사무소 포함)을 두고 있는 부산·경남·울산소재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향후 중국의 세정운영 변화에 따른 국내기업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중국의 조세제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설문방법

우편, Fax 및 직접교부 방법을 활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3) 설문과정

먼저 오랜 세무행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게 된 부산광역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소 중 비교적 규모가 크고 외국인투자기업을 많이 기장대리하고 있는 세무사 6명을 선별한 후 각각 50건씩 총 300건의 설문지를 세무사에게 우편 및 직접 교부하여 설문대상 기장대리업체의 협조를 구하여 설문을 실시한 결과 73건 회수할 수 있었다.

이후 부족한 부분은 대학원 동문, 기타 업무상 지인 등 다양한 학연과 지연을 활용하여 우편, Fax 및 직접교부 형태로 이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한 결과 28건을 회수, 최종적으로 총 101건의 설문지를 회수할 수 있었다.

특히 설문대상을 중국 현지에 기업을 둔 국내기업으로 특정하다 보니 이들 대상 업체가 부산·경남 등 지역에 많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으며 전체적인 설문과정을 요약해 보면 <표4-1> 내용과 같다.

<표4-1> 설문과정 요약

| 설문대상 | 설문방법 | 설문지배부 | 설문지회수 | 회수비율 |
|---|--------------------|-------|-------|-------|
| 중국에 현지기업 (연락사무소 포함) 을 두고 있는 국내기업 | 우편 | 50 | 12 | 24.0% |
| | Fax, E-mail 등 전자매체 | 8 | 8 | 100% |
| | 세무사대리 | 250 | 61 | 24.4% |
| | 직접교부 | 20 | 20 | 100% |
| | 합 계 | 328 | 101 | 30.8% |

나. 인구통계적 변수

인구통계적 변수는 설문지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직위, 근무연수, 업종, 매출규모 및 종업원수 등 8개 항목의 기본적인 변수를 고려하여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총 응답자 101명에 대한 기본적인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성별·연령

<표4-2> 성별·연령분포

| 구 분 | | 연령대별 인원수(명) | | | | |
|-----|----|-------------|-----|-----|-----|-----|
| 인원 | 성별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 88 | 남자 | 2 | 26 | 39 | 17 | 4 |
| 13 | 여자 | - | 10 | 3 | - | - |

전체 응답자 101명 중 성별로는 남자가 87%이고, 여자가 13%로 남자 응답비율이 훨씬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20대와 60대 응답자가 가장 적었다. 특히 30~40대의 경우 남자와 여자 공히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20대 응답비율은 전체 2%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력

<표4-3> 학력분포

| 구 분 | | 학력별 인원수 (명) | | | |
|-----|----|-------------|------|----|------|
| 인원 | 성별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 대학원졸 |
| 88 | 남자 | 9 | 11 | 55 | 13 |
| 13 | 여자 | 2 | 1 | 8 | 2 |

학력분포의 경우 대졸이 전체의 6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대학원졸, 전문대졸 및 고졸순서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녀 공히 이러한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은 특이할 만하다.

(3) 직위

<표4-4> 직위분포

| 구 분 | | 직위별 인원수 (명) | | | |
|-----|----|-------------|----|------|----|
| 인원 | 성별 | 대표자 | 임원 | 과장이상 | 사원 |
| 88 | 남자 | 17 | 24 | 36 | 11 |
| 13 | 여자 | - | 1 | 8 | 4 |

직위분포의 경우 과장이상이 전체의 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임원, 대표자, 사원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원 및 대표자 응답비율이 전체의 42%로 이는 기업 최고 경영진의 생각이나 의도가 본 설문에 직접 반영된 것으로써 그 가치와 효용성을 더해주고 있다.

(4) 근무연수

설문대상자 101명의 전체 평균 근무연수는 11년 1개월로 비교적 장기 근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평균 근무연수는 대략 11년 7개월, 여자는 6년 7개월 정도로 여자에 비해 남자가 1.8배 정도 많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업종

<표4-5> 업종분포

| 건설 | 도매 | 서비스 | 운수 | 제조(업체수) | | | | | | | |
|----|----|-----|----|---------|-------|-------|------|------|------|-------|----|
| | | | | 산업기계 | 자동차부품 | 선박기자재 | 신발부품 | 전자부품 | 합성수지 | 휴대폰부품 | 기타 |
| 2 | 4 | 10 | 5 | 19 | 16 | 11 | 5 | 12 | 8 | 2 | 7 |

설문에 응답한 101개 업체의 업종별 분포도를 보면, 건설, 도매, 서비스, 운수 및 제조업으로 크게 분류되며, 이중 제조업이 전체 응답자 비율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업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동차부품, 산업부품, 전자부품 및 선박기자재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합성수지, 신발부품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부산·경남산업 특성상 조선기자재와 신발부품 업체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은 특이할 만 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기타 업종으로는 담배(2), 식품(2), 타이어(1), 장난감(1) 및 양초(1) 등이 있다.

(6) 매출규모

<표4-6> 매출규모 현황

| 50억이하 | 51억~100억이하 | 101억~300억이하 | 301억~500억이하 | 501억~1,000억이하 | 1,001억이상 |
|-------|------------|-------------|-------------|---------------|----------|
| 34 | 13 | 8 | 10 | 9 | 27 |

설문응답 업체 101개의 매출규모를 살펴보면, 100억원 이하의 소규모 업체가 47%로 가장 많았으며, 501억원 이상의 비교적 대규모 업체도 3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101억원 이상~500억원 이하의 중규모 업체는 17%로 나타났다.

(7) 종업원수

<표4-7> 종업원수 현황

| 50명이하 | 51명~ 200명이하 | 201명~ 500명이하 | 501명~ 1,000명이하 | 1,001명이상 |
|-------|----------------|-----------------|-------------------|----------|
| 41 | 26 | 9 | 8 | 17 |

101개의 설문응답 업체의 종업원수는 50명 이하규모가 41%로 가장 많았고, 51명 이상~500명 이하규모가 35%, 501명 이상~1,000명 이하규모가 8%로 나타났다. 특히 1,001명 이상 대규모 종사직원을 고용하는 있는 업체비율이 16%인 점은 주목할 만하다.



2. 실증분석 결과

가. 문제점 인식정도 분석결과

앞서 제3장에서 기술한 현행 중국 조세제도의 문제점에 기초하여 중국 조세제도에 대한 문제점 인식정도를 설문을 통해 직접 측정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 있어서 응답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목 별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성향이 강하다' 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2%가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 라고 답변했으며,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5%,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3%였으며,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두 번째 항목인 '간접세 비중이 높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6%가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 라고 답변했으며,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30%,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4%였으며, 이 질문항목에서도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세 번째 항목 '조세의 종목간 중복이 많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가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 라고 답변했으며,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45%,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6%였으며,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네 번째 항목인 '세율구조가 복잡하고 높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9%가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 라고 답변했으며,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30%,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1%였으며,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다섯 번째 항목 '법률 규범화 정도가 미약하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가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 라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25%,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7%였으며,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 항목인 ‘실질주의보다 형식주의에 의한 과세가 많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가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 라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36%,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0%였으며,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일곱 번째 항목 ‘정부계획에 의한 세수관리가 이루어진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가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 라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7%,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0%였으며,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로 나타났다.

여덟 번째 항목인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이 높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가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 라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29%,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4%였으며,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표4-8>과 같다.

<표4-8> 중국의 조세제도에 대한 문제점 인식정도 설문조사 결과

| 응답구분 | 질문내용 및 응답인원 | | | | | | | |
|--------|-------------|------------|------------|-------------|-----------------|------------------|----------------------|----------------|
| | 정책 성향이 강하다 | 간접세 비중이 높다 | 세목의 중복이 많다 | 세율이 높고 복잡하다 | 법률 규범화 정도가 미약하다 | 실질보다 형식주의 과세가 많다 | 정부계획에 의한 세수관리가 이루어진다 |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이 높다 |
| 매우 그렇다 | 34 | 8 | 5 | 13 | 12 | 7 | 19 | 14 |
| 그렇다 | 48 | 58 | 44 | 46 | 45 | 47 | 53 | 53 |
| 보통이다 | 16 | 31 | 46 | 31 | 26 | 37 | 18 | 30 |
| 그렇지 않다 | 3 | 4 | 6 | 11 | 17 | 10 | 10 | 4 |
| 전혀 아니다 | 0 | 0 | 0 | 0 | 1 | 0 | 1 | 0 |

나. 향후 세정운영 방향 예측정도 분석결과

앞서 제3장에서 기술한 향후 중국의 세정운영 방향에 기초하여 향후 중국의 세정운영 방향을 설문을 통해 직접 측정한 결과에 대해서도 현행 중국 조세제도의 문제점 인식정도 측정항목과 유사하게 거의 대부분의 항목에 있어서 응답자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목별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에 대해 세금혜택을 줄이거나 철폐할 것이다' 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5%가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 라고 답변했으며,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21%,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3%였으며,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로 나타났다.

두 번째 항목인 '고수입업종(첨단기술, S/W, 변호사 등)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가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 라고 답변했으며,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5%,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2%였으며,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세 번째 항목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조세회피에 대한 국가간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1%가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 라고 답변했으며,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25%,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4%였으며,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네 번째 항목인 '세금징수를 강화할 것이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3%가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 라고 답변했으며,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5%,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2%였으며,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다섯 번째 항목 '조세행정시스템을 과학화·체계화할 것이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2%가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 라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29%,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8%였으며,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 항목인 ‘세무행정 절차를 보다 간소화할 것이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3%가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 라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44%,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20%였으며,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3%로 나타나 다른 항목들에 비해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점은 특이할 만하다.

마지막 항목인 ‘세법체계를 국제수준에 맞게 국제화·표준화할 것이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가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 라고 응답했으며,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44%,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1%였으며,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4%로 나타나 동항목도 다른 항목들에 비해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점은 특이할 만하며, 위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표4-9>와 같다.

<표4-9> 향후 중국의 세정운행 방향에 대한 예측정도 설문조사 결과

| 응답구분 | 질문내용 및 응답인원 | | | | | | |
|--------|-------------------------------------|-------------------------|----------------------------------|---------------|-------------------------|-----------------------|-----------------------------|
| | 중국 진출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 또는 철회할 것이다 | 고수입업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 고의적·지능적 조세회피에 대한 국가간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 세금징수를 강화할 것이다 | 조세 행정 시스템을 과학화·체계화할 것이다 | 세무 행정 절차를 보다 간소화할 것이다 | 세법체계를 국제수준에 맞게 국제화·표준화할 것이다 |
| 매우 그렇다 | 27 | 17 | 10 | 23 | 8 | 3 | 2 |
| 그렇다 | 38 | 66 | 61 | 60 | 54 | 30 | 39 |
| 보통이다 | 22 | 16 | 26 | 16 | 30 | 45 | 45 |
| 그렇지 않다 | 13 | 2 | 4 | 2 | 8 | 20 | 11 |
| 전혀 아니다 | 1 | 0 | 0 | 0 | 1 | 3 |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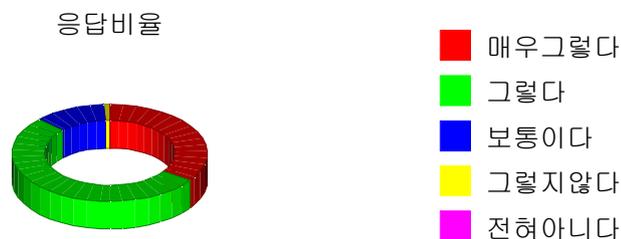
3. 중국 조세제도 변화에 따른 국내기업 영향 예측

향후 중국의 세정운영 방향을 토대로 중국에 이미 진출하였거나 또는 진출하게 될 국내기업에게 예상되는 과급효과에 대해 실제 중국에 현지법인 또는 사무실을 두고 있는 부산·경남소재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101개 업체에 대한 『향후 중국의 세정운영 변화에 따라 국내기업이 직면하게 될 과급효과』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세부담의 증가, 수익구조 악화, 원가상승, 규제와 간섭의 증가 등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조세부담 증가

먼저 향후 중국의 세정운영 변화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기업에 대한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업체 중 88%가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고,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1%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그렇지 않다’ 내지는 ‘전혀 아니다’ 라고 답변한 업체는 전체의 1%로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조세부담의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4-1>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인가?



중국 국가세무총국에 따르면 2004년 중국의 조세수입은 2조 5,718억 위안(관세 및 농업세 제외, 이하 동일)으로 전년대비 25.7%의 증가율 및 5,256억 위안의 초과징수를 기록했다. 2005년과 2006년에도 각각 3조 866억 위안, 3조 7,636억 위안(2007년은 4조 5,160억 위안으로 추정)을 기록하는 등, 조세수입이 매년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폭발적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만성적인 재정적자 해소 및 경제성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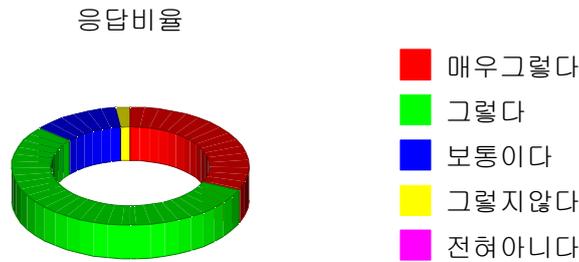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조세부담 증가는 중국 진출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 및 교민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2006년부터 시행된 개인 고소득자(외자회사 주재원 등)의 개인소득세 자진신고납부제도, 2008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통합 기업소득세법과 외자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이전가격과세관리강화 등은 중국에서 장기적,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적지 않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¹⁴⁾

나. 수익성 악화

중국 진출 현지기업의 수익구조가 앞으로 나빠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업체의 87%가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2%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그렇지 않다’ 내지는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2%로 매우 낮게 나타나 대부분이 국내기업들이 중국현지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온바오 김용철, “美 포브스, 중국 조세부담지수 세계 3위”, 2007.5.18.

<도표4-2> 수익구조가 악화될 것인가?



<도표4-3> 원가상승 요인이 증가할 것인가?



(1) 인력난

중국하면 의례 임금이 싼 나라로 생각한다. 90년대 중국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 사장들이 한 말을 들어보면 당시 평균임금은 10만원 내외였다고 한다.. 그동안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 그런데 요즘 사정은 이전과 전혀 달라 보인다. 경제발전 속도에 걸맞게 최근 10여 년 동안 매년 임금이 5%를 전후해 오르다 보니 요즘은 임금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근 휴위트 컨설팅(Hewitt Consulting)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천개 외자 기업과 합자기업,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올 임금인상률 조사를 했는데 중국기업

의 임금인상률이 6.4%~8.4%로 나타났다. 인도기업에 이어 아태지역에선 두 번째로 높은 인상률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조사에 중국기업 265개사가 참여했는데 대부분이 내년에도 이 같은 비율로 인상될 것이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혹자는 올라봐야 월 3~40만원 수준 아니냐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르다. 월급과 별도로 회사측은 의료보험비, 사회복지비, 직원복지비등 10여 가지의 각종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다 현지화 명목으로 이곳저곳 행사 스폰서를 해주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클 때가 많다고 한다. 월급은 30만원인데 관련세금, 사회복지비용, 준조세까지 합치면 직원개인 월급이 50만원을 훌쩍 넘는다. 숙련공의 경우 월급만 50만원을 넘는 경우가 허다해 ‘중국=저임금’은 더 이상 통하지 않다는 게 한국기업인들의 설명이다.¹⁵⁾

중국화폐의 구매력과 중국의 일인당 GDP가 지난해 1,000달러를 갓 넘겼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정도 월급이면 저임금이 아니라 고임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다 중국인들은 같은 업종에서 보수가 단돈 1만원이라도 많은 곳이 있으면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난 7월부터 쭉저우 지역의 최저임금은 월 540위안(약 8만1000원)에서 620위 안(약 9만3000원)으로 14.8%나 올랐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초급 기능공도 1000위안(약 15만원) 이상 줘야 구할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 진출한 20만여 개의 공장이 입주해 세계의 공장지로 불리는 동완지역에 부족한 기능공은 70만~8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상하이지역은 200 만여 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구인난이 심각해지면서 노동자들이 임금이 한 푼이라도 높거나 근로조건이 좋은 직장을 따라 철새처럼 이동하면서 이직률도 10~20%대로 높아지고 있으며 임금도 연 10~15%씩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5) 동아일보, “차이나 러시이후 인건비 빼먹던 시대 끝났다”, 2007.10.30.



(2) 전력 및 용수난

한국기업의 최대 투자지역인 중국에서 최근 전력 및 용수난에 대한 정보가 잇따르고 있어 투자지역 선정시 주의를 요한다. 최근 발표된 톈진(天津)시 도시총체계획에 의하면 2005년 톈진시의 용수 부족량은 36억 4,700만^m에 달해 부족량이 현재 공급물량의 3배에 달하는 등 향후 톈진시의 용수난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신화사 보도에 의하면 톈진시는 원래 용수난이 심각한 도시로 일인당 평균 수자원 점유량도 겨우 160^m에 불과하여 중국 전체의 일인당 평균대비 1/16에 불과하고, 세계 평균치와 비교해서는 겨우 1/50에 불과한 상황이다. 톈진시 도시총체계획에 의하면, 2,005년도 톈진시의 용수 부족량은 36억4,700만^m에 이르고 2,010년에는 39억 7,900만^m에 이르며, 2,015년에는 40억^m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용수난과 함께 전력부족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¹⁶⁾

(3) 물가상승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세계 원자재와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16) 지해범기자, <http://www.blog.naver.com/ssrt/60004554776>, 2007.7.31.

로 불렸던 중국이 경기둔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물가상승률이 10년만의 최고 수준이다. 경제분석가(economist)들이 중국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금리를 약간 올리라는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아기가 아장아장 걸듯 금리를 한번에 0.18~0.27%포인트씩 짚금짚금 올리고 있다. 다른 나라들처럼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은 18이나 27이 장수(長壽)를 상징하는 9로 나뉘지는 숫자라는 미신과 관련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다음번에 기준금리를 올릴 때 0.27%포인트 대신 10배인 2.7%포인트를 올리지는 않을까 관심을 가진다. 중국 정부의 과감한 경제정책변화를 의미하는 급격한 금리인상은 세계 4대 경제대국으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중국 경제의 과열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물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급격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단기 금리를 2.7%포인트씩 올릴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중국 중앙은행의 가장 큰 실수는 스스로를 미국 FRB(연방준비제도이사회)나 유럽중앙은행(ECB)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풍부한 채권시장과 투명성,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갖고 있는 선진 경제권에서 0.25%포인트 인상은 중요한 문제다. 반면 개발도상국이나 중국 같은 미성숙경제에서 이 정도의 금리인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11일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만일 그렇다면 그는 임무달성에 실패한 것이다. 중국의 8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6.5% 상승했다. 7월에는 5.6% 올랐다. 돼지고기 공급부족으로 육류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식료품비가 18.2% 급등하며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공산당 지도자들은 5년마다 열리는 다음달 17차 전국대표대회(중국 공산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식료품비 상승이 전체적인 물가상승을 유발해 세계 최대 인구대국의 불안감을 부채질할까 우려하고 있다.¹⁷⁾

물가상승은 또 향후 중국경제를 내수기반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소비자들의 지출을 늘리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중국의 물가상승은 세계적인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만일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중국발 물가상승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4) 위안화 절상

미국이 중국에 위안화를 절상하라는 압력은 오래전부터 넣어왔으나 중국은 아직 중국 경제가 약하다고 하면서 예전부터 계속되어온 고정환율제를 고집해 왔다. 그러나 가중되는 미국 및 여러 나라들의 압력을 계속 무시할 수 없어 최근 통화바스켓에 기초한 관리변동환율제도로 변경했다. 즉 국제사회의 압력을 더 이상 견디기 어려웠던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낮으면 중국에서 생산된 물건의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중국이 무역에서 엄청난 흑자를 보게 되지만 반대로 중국과 교역하는 다른 나라들은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의 입장은 매우 강경하다.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무역적자를 계속 보이고 있고 이것이 미국 경제에 나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싼 중국 물건들이 우리나라에서와 비슷하게 미국의 소비시장을 거의 장악하게 되면 미국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머지않아 문을 닫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¹⁸⁾

위안화 절상은 중국 현지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즉 중국에서 수입하는 생산품은 중국에서 중국 생산제품보다 더 많은 경쟁력을 갖게 되겠지만 중국에서 수출하는 물건들은 값이 더 올라가게 되므로 중국 현지기업의 상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국 내수시장은 물론 수출시장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17) edaily, “한국은행 중국발 물가안정 끝나 경계 필요”, 2004.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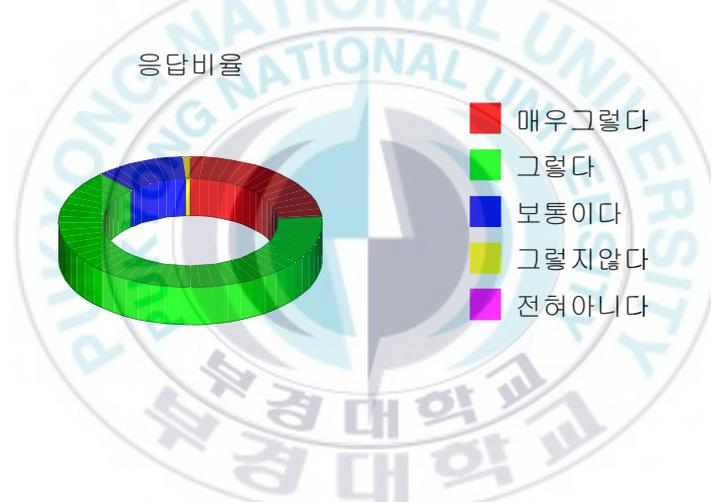
SBS TV, “중국 원자재 대란 이어 곡물 파동”, 2004.10.12.

18) 전자신문,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 현지법인 손실 많은 듯”, 2005.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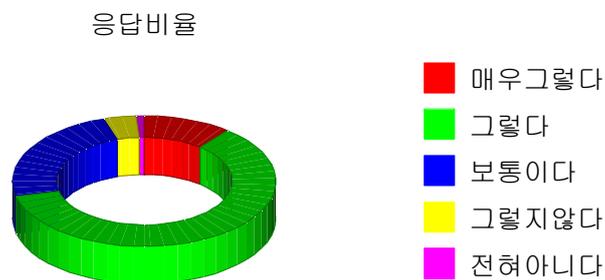
다. 세무조사 강화

중국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증가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업체의 89%가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0%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그렇지 않다’ 내지는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로 매우 낮게 나타나 대부분이 국내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규제와 간섭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4-4> 규제와 간섭이 증가할 것인가?



<도표4-5> 분식회계 위험이 증가할 것인가?



최근 베이징(北京)시 세무국에서 ‘중국개인소득세법에 근거해 개인소득세 납부를 위한 등기수속을 밟으라’는 긴급통지를 받았다. 지난 2004년과 지난해에도 비슷한 서한을 받았었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지난 3년 동안 보낸 통지 내용에 덧붙여 “올해는 결코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런 통지는 외국기업 주재원은 물론 장기출장자에게도 보내지고 있다. 중국국가 세무총국이 외국인 소득세와 외국 투자기업을 세무관리 중점 조사 대상으로 지정한 올해 초부터 세금탈루조사 대상은 더욱 넓어지고 있다. 베이징 세무국의 한 관계자는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인 기업 주재원은 물론 연간 183일 이상 중국에 체류하는 출장자에 대한 소득세 조사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¹⁹⁾

개인소득세 조사는 그나마 신사적이다. 외국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세무조사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외국 투자기업들이 고전적으로 이용하는 이전 가격 조작을 통한 탈세를 집중 조사하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특허권·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해외 지급 로열티를 높게 책정하거나 계열사 금융법인으로부터 높은 이자의 자금을 들여오는 행위에 대해서도 실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사는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됐고 일부 한국 기업들은 조사 과정에서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 받아 경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는 그나마 세무관리를 꼼꼼히 하고 있다는 대기업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사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 대기업의 관계자는 “지난해 한 계열사가 세무조사를 받아 어려움을 겪었다”며 “중국 회계전문가를 그룹 내 투자기업에 보내 세무 관련

19) 호남경제보, “中 세무단속 구호 ‘100-1=0’ 100건 중 1건만 잘못돼도 전부 잘못 된 것으로 간주”, 2003.4.15.

업무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 큰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세무조사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만 피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은 앞으로 더 큰 화(禍)를 자초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번 조사는 결코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법에 따라 회계장부를 만들고 근거 자료를 남기는 등 철저한 세무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거래 형태도 건물과 상품 등 유형자산은 물론 용역서비스와 같은 무형자산도 포괄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중국내 투자법인이 외국 본사의 통제를 받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중국 법인의 자율성이 없어 이윤의 이전 등이 보다 용이하고 광범위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관련 기업과 거래액이 비교적 큰 기업과 2년 이상 연속적으로 결손을 보고 있는 기업도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보지 못하면서도 경영 규모를 확대하는 기업은 세무조사 가능성이 그 어느 경우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²⁰⁾

이밖에 ①이익의 변화가 큰 기업 ②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기업과 업무 거래가 발생하는 기업 ③이익 수준이 동일 업종보다 낮은 기업 ④그룹 회사 내부와 비교해 이윤율이 낮은 기업 ⑤다양한 이유로 관련 기업에 불합리한 비용을 지급하는 기업 ⑥법정 감면 기간, 또는 감면세 기간 만료 시 이윤이 급격히 하락해 조세를 피하는 기업 등도 중국 정부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조사 여부는 중국의 세무당국에 접수된 연간 신고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납세연도 종료 후 4개월 내에 업체가 신고서를 접수하면 이를 근거로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선정이 되면 1단계로 현장감사와 사전 분석을 통해 기초조사를 하고 이어 구체적인 이전가격 정도를 파악하는 정밀조사가 이루어진다.

중국 진출 투자기업들은 조사 개시 전은 물론 개시 후에도 세무당국의 조

20) 국세청, “중국 국가세무총국의 2004년 특정항목 조사계획”, 2003.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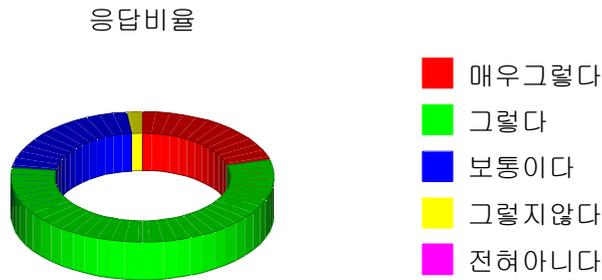
사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 회사 내 회계 및 세무 전문가가 이전가격 규정을 숙지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는 상시체제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회사가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분석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 동시에 이전가격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는 비즈니스는 중국 내 정상가격을 파악하고 무형자산에 대한 가격 평가 정당성(합리성)을 증빙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봉책이 아닌 정공법을 택하는 것이다. 즉 합리적인 관련 가격 및 이익(결손)에 근거한 연도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재무자료 등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고 경영과정에서 세무 및 법률 전문가를 초빙해 탈세가 아닌 합리적인 절세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만약 이전가격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 예약정가(豫約定價) 협의를 통해 이전가격 조사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예약정가 협의란 사전에 세무기관과 매매 가격을 협의해 약정한 후 그 가격 범위 내에서 거래를 진행하는 제도로 이전가격 조사를 피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용인된 수단이다. 만약 이전가격 조사가 진행된다면 대략 1년 정도가 소요되어 정상적인 회사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라. 외환관리 강화

중국 현지기업에 대한 국내기업의 투자자금 회수가 어려워 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업체의 78%가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20%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그렇지 않다' 내지는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2%로 매우 낮게 나타나 대부분이 국내기업들이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자금 회수에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도표4-6> 투자자금 회수가 어려워 질 것인가?



중국은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외상투자기업의 계좌 관리 및 외자은행의 외채관리에 대해 외환통제 및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 외환관리국은 2004년 5월 17일자로 외상투자기업의 자본금 계좌와 외채계좌 관리 강화를 위해 ‘외상투자기업 자본금 계좌 및 외채등기관리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¹⁾

(1) 자본금계좌 및 외채계좌 관리방법 강화

- 외상투자기업은 1회 환전금액 미화 2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자금용도가 표시된 환전신청서 및 타인계좌 입금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환전한 금액은 실수취인 계좌에 직접 입금시켜야 함
- 외채계좌의 환전시 자본금계좌 환전 방법을 준용하고, 외채계좌의 자금을 환산하여 인민폐 대출을 상환할 수 없음
- 외상투자기업의 총차입 가능금액의 한도는 총투자금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액임. 즉 총차입 금액(1년 이상의 중장기 대출액 + 1년 이내의 단기운전자금 대출액)이 동 차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종전까지 1년 이내의 단기운전자금

2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중국 외환관리방법 강화 내용 발표”, 동북아팀, 2004.6.15.

대출은 기업의 총투자금액 범위 내에 포함시키지 않고 관리했으나, 규정강화로 총투자금액에 포함됨에 따라 1년 이내 운전자금을 과다 차입한 기업은 동 자금을 상환하든지 총투자금액 증가에 따른 비준을 받아야 함

<표4-10> 총투자금액 대비 등록자본 비율

| 총투자금액 | 등록자본 비율 |
|-------------------------|-------------------|
| US\$ 3백만이하 | 총투자금액의 70%이상 유지 |
| US\$ 3백만 ~ US\$ 4.2백만 | 최저 US\$ 2.1백만 |
| US\$ 4.2백만 ~ US\$ 10백만 | 총투자금액의 50%이상 유지 |
| US\$ 10백만 ~ US\$ 12.5백만 | 최저 US\$ 5백만 |
| US\$ 12.5백만 ~ US\$ 30백만 | 총투자금액의 40%이상 유지 |
| US\$ 30백만 ~ US\$ 36백만 | 최저 US\$ 12백만 |
| US\$ 36백만 이상 | 총투자금액의 33.3%이상 유지 |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4.6.15)

(2) 외채총량제를 통한 외자은행의 외채관리 강화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2004년 5월 27일자로 외자은행(외자독자은행, 중외합자은행, 외국은행 지점)에 대한 외채관리 강화를 위해 ‘외자은행 외채관리 방법’을 발표하고 6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동 규정에 따르면, 외자은행은 매년 2월말까지 당해연도에 발생할 외채(중장기 + 단기) 총액을 산출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외환관리국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 1년 이상(중장기) 외채는 국가발전위원회가 확인하고, 1년 이내 외채는 외환관리국이 관리함
- 또한 기업이 외자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채는 인민폐로 환전하여 사용하지 못함 ⇒ 외환대출은 수입원자재 결제자금으로만 사용하고, 그 상황재원도 자체 외화나 수출대금으로 상환하라는 의미임
- 규정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외자은행은 매년 초에 등록소재지의 외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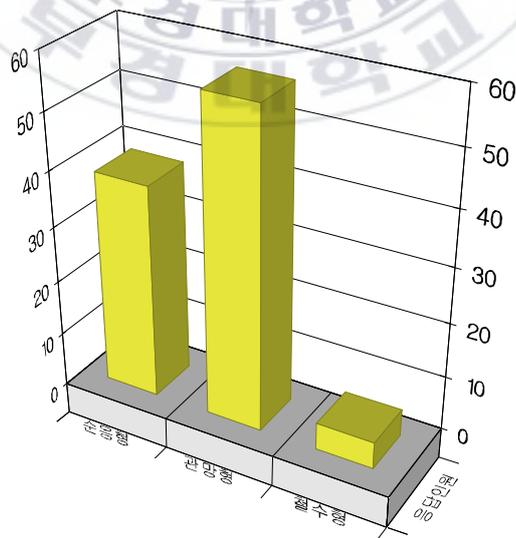
관리국 부서에 외채통계수치를 보고하고, 국내 외화대출 관련 법규에 따라 현지 외환관리국에 국내외 대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국가외환관리국은 외자은행의 외채차입 상황과 외화대출 상황에 대해 정기, 부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



V. 국내기업 대응방안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제3장에서 도출된 현행 중국 조세제도의 문제점 및 향후 세정운영 방향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 진출한 현지기업이 직면하게 될 과급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중국의 세정운영 변화에 따른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응방안을 각 유형 [1.중국의 시장변화에 대해 그대로 적응해 나갈 것이다(이하 ‘순응형’ 이라 함), 2. 관망 후 철수 또는 계속 투자 여부를 나중에 판단할 것이다(이하 ‘관망형’ 이라 함), 3. 당장 철수 또는 투자자금을 회수할 것이다(이하 ‘철수형’ 이라 함)] 별로 분류하여 국내기업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 각 유형별 시각과 관점을 가지게 된 요인들을 파악, 나아가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도표5-1> 국내기업 대응유형



1. 순응형

설문에 응한 101개 업체 중 ‘중국의 시장변화에 그대로 적응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38.6%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지 못했다. 이는 과거 긍정적이고 투자 지향적 이었던 중국시장이 제반 경영여건 악화로 점점 더 부정적이고 투자가치가 불투명한 시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순응형을 선택한 경우 그 대응방안으로 기업 및 정부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설문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응답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가. 기업차원의 대응방안

(1) 중국 내수시장 판매 강화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인해 중국현지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시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수출 비중을 축소하고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판매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중국의 선진국과의 통상 마찰로 인한 수출 쿼터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제3국 수출시 쿼터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쿼터 대상지역으로 수출할 때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한국으로 수입한 후 한국의 쿼터를 이용하여 수출함으로써 수출물량을 확대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세무당국과의 관계개선 및 법규범 준수

중국 정부의 세무관리 강화에 대해 우리 기업들은 현지 세무당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의 법제도가 점차 강화됨에 따라 향후 중국에서의 경영은 판시(關係)보다는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방향으로 전환 또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3)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

외국인 개인소득세 과세 강화에 따른 외자기업 파견 직원 임금의 경우 100% 현지에서 지급함으로써 성실 납세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외자기업의 경우 가능한 한 현지에서 많은 기업이윤을 창출하여 납부함으로써 이전가격에 대한 불필요한 세무조사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기업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4) 富의 사회 환원

중국 현지기업의 경우 자칫 경영활동에 치우친 나머지 기업의 활동에 소홀해 질 수 있으며 종교·자선·학술·구호 등 공익을 목적하는 단체 등에 대한 자발적 기부문화 조성 및 동 사업에 대한 적극적 진출을 통해 다양한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궁극적으로 ‘부의 사회 환원’이라는 기업가치를 직접 실천함으로써 현지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5) 기술·자본집약적 생산구조로 전환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현지의 값싼 노동력일 것이다. 섬유, 신발, 완구, 가구 등 주로 노동집약적 형태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으나 앞서 제기한 문제점에서 나타났듯이 중국 현지인에 대한 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또한 직장이동이 빈번하여 많은 고전과 위험이 예상되므로 충성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서 보다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노동력에 의존한 노동집약적 생산구조에서 탈피하여 기계화·자동화를 통한 기술·자본집약적 생산구조로 탈바꿈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현지 핵심인재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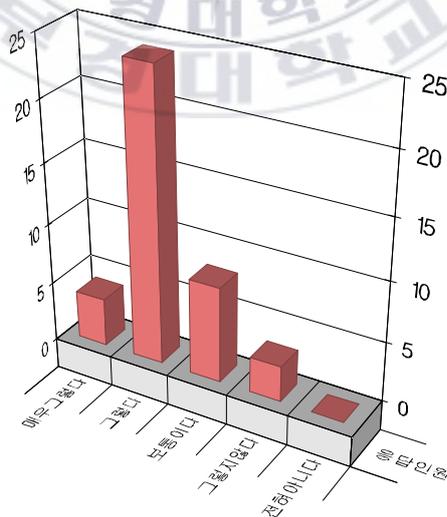
중국 내에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핵심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기업도 우수한 인재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앞으로 위기상황들은 이들 인재들이 해결해 줄 것이다

나.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1) 신기술개발 등 자금지원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할 과제 중 ‘신기술개발 등 자금지원’ 항목에 대해 응답 업체 39개 중 71.8%가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20.5%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그렇지 않다’ 내지는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7.7%로 국내기업들이 정부의 자금지원을 대부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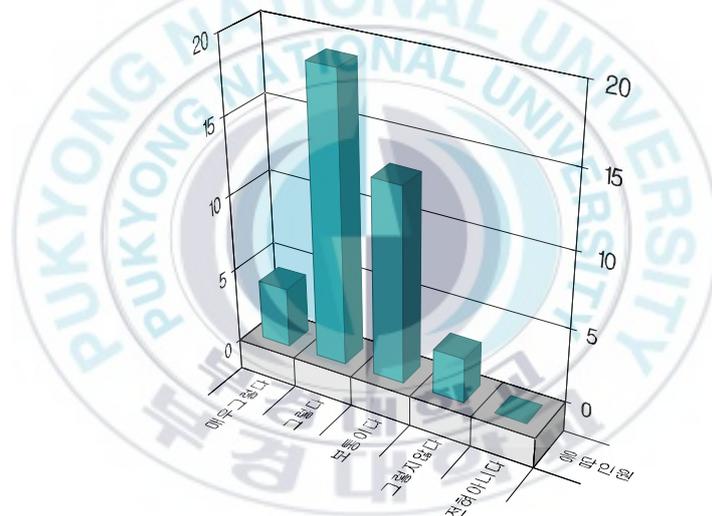
<도표5-2> 신기술개발 자금지원



(2) 중국내 마케팅활동 지원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할 과제 중 ‘중국내 마케팅활동 지원’ 항목에 대해 응답 업체 39개 중 58.9%가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33.3%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그렇지 않다’ 내지는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7.7%로 중국에 대한 마케팅활동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많은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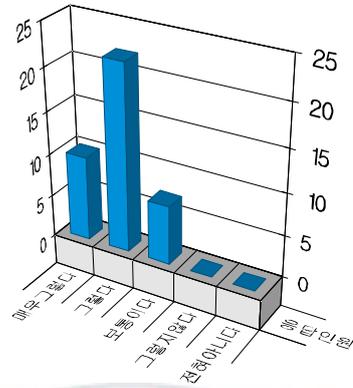
<도표5-3> 중국내 마케팅활동 지원



(3) 중국정부와 경제정책 협력강화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할 과제 중 ‘중국 정부와 경제정책 협력강화’ 항목에 대해 응답 업체 39개 중 82.1%가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7.9%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그렇지 않다’ 내지는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기업들이 중국 정부와 우리 정부간 긴밀한 경제정책 공조를 절대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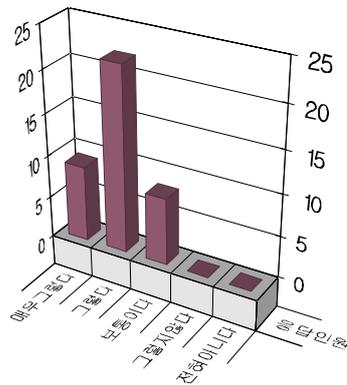
<도표5-4> 중국 정부와 경제정책 협력강화



(4) 중국 과세당국 세무조사시 적극 대응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할 과제 중 ‘중국 과세당국 국내 현지법인 세무조사시 적극 대응’ 항목에 대해 응답 업체 39개 중 79.5%가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20.5%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그렇지 않다’ 내지는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중국 과세당국이 국내기업 현지법인 세무조사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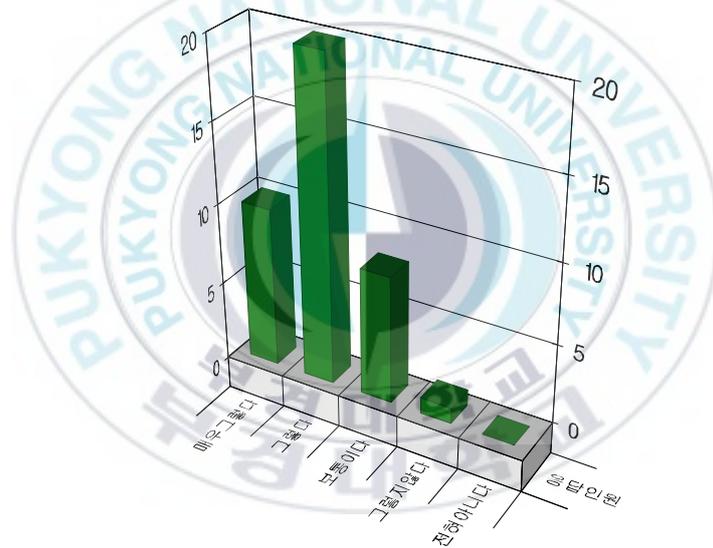
<도표5-5> 중국 과세당국 세무조사시 적극대응



(5) 중국조세 전문가 양성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할 과제 중 ‘중국 조세전문가 양성’ 항목에 대해 응답 업체 39개 중 76.9%가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20.5%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그렇지 않다’ 내지는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2.6%로 나타나 국내기업들이 정부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조세전문가 양성을 상당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5-6> 중국조세 전문가 양성



2. 관망형

설문에 응한 101개 업체 중 ‘관망 후 철수 또는 계속 투자여부를 나중에 판단할 것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56.4%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 이는 현재 중국의 경영여건 악화가 간과할 만한 수준을 넘어 국내기업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의사결정에 매우 신중히 대응하고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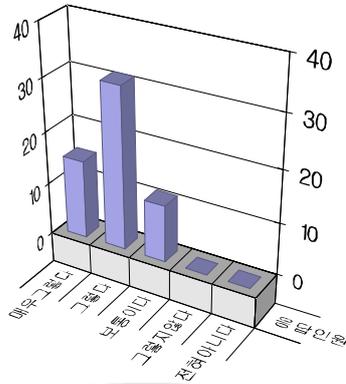
나아가 관망형을 선택한 경우, 설문에 응한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설문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응답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이들 관망형 기업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예측해 보았다..

가. 의사결정요인

(1) 환율, 금리 등 변동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환율, 금리 등 변동’ 항목에 대해 응답 업체 57개 중 80.7%가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9.3%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그렇지 않다’ 내지는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 국내기업들이 환율, 금리 등 주요 경제지표의 변동 추세를 지켜 본 후 철수 또는 계속 투자여부를 판단하려고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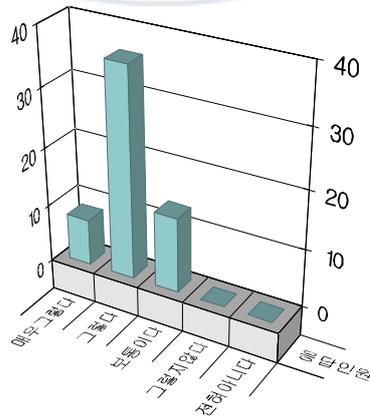
<도표5-7> 환율, 금리 등 변동



(2) 중국시장의 성장성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중국시장의 성장성’ 항목에 대해 응답 업체 57개 중 77.2%가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22.8%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그렇지 않다’ 내지는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의 중국시장 성장성이 국내기업들로 하여금 중국에서 철수 또는 계속 투자를 하게 만들 것인지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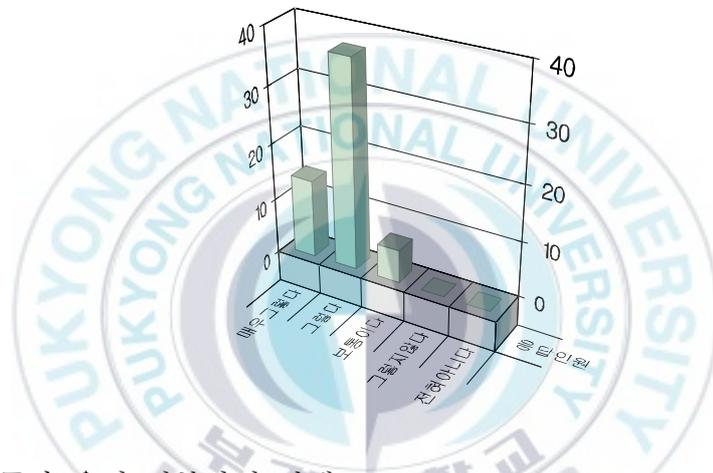
<도표5-8> 중국시장의 성장성



(3) 원자재, 인건비 등 물가변동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원자재 등 물가변동’ 항목에 대해 응답 업체 57개 중 89.5%가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0.5%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그렇지 않다’ 내지는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원자재 등 물가변동추이가 대단히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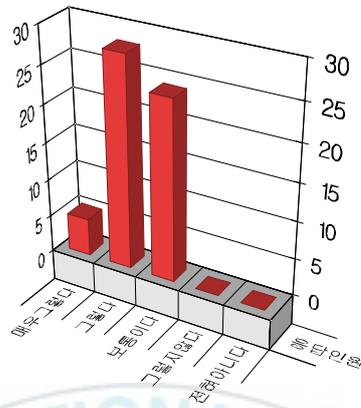
<도표5-9> 원자재 등 물가상승



(4) 중국과 우리 정부와의 관계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원자재 등 물가변동’ 항목에 대해 응답 업체 57개 중 57.9%가 ‘매우 그렇다’ 내지는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보통이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42.1%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그렇지 않다’ 내지는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거의 대다수의 기업들이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지켜본 후 진로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5-10> 중국과 우리정부와의 관계



나. 향후 전망

중국 비즈니스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그 동안 원가절감 및 Big Market에 대한 기대로 대다수 기업들이 진출했지만 그 모두가 좋은 성적표를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수익구조 : 손익분기점 수준(39%), 흑자(32%), 적자(29%) ; 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 '05.6월> 특히 진출한 기업들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0개월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중국 진출을 위해 3년 이상의 투자와 시장변화에 대한 Risk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경제 연착륙(soft-landing)을 위한 금리 인상, 지급준비율 상향 조정, 긴축조치 실시, 중국의 무역흑자 증가와 외환보유고 급증으로 인한 위안화의 지속적 가치 상승으로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악화, 중국의 무역수지 급증에 따른 중국과 선진국간 통상마찰 증대,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자원 유출형·저부가가치 가공무역 금지, 부가가치세 환급 폐지/축소, 외자 가공무역 기업의 R&D 투자와 기술이전 정책적 강제, 환

경규제 강화, 높은 임금인상과 사회보장비용 징수관리 강화로 실질 노동비용의 급속한 증가, 노동자의 권리강화 및 담합(카르텔), 독과점행위, M&A, 행정적 독점 처벌강화 등 그야말로 중국의 경영환경 악화로 중국내 한국기업의 경영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중국내 비즈니스 환경변화가 일시적으로 빚어진 현상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일반적인 경제현상임을 감안할 때 오히려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데 있다.

따라서 중국 시장변화를 지켜보고 철수 또는 계속 잔류 여부를 심사숙고 하겠다고 응답한 관망형 현지기업들도 머지않아 철수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연구자의 생각이다.



3. 철수형

설문에 응한 101개 업체 중 ‘당장 철수 또는 투자자금을 회수 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5%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시장이 다소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세계 경제 중심국가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는 만큼 철수 등 극단적인 조치는 지양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철수시 현지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해 보고, 국내에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응답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표5-1> 정부차원의 대응방안 설문조사 결과

| 응답 (명) | 질문내용 | | | |
|-----------|-------------------|-------------------|----------------------|-------------------|
| | 비과세, 감면 등 세제지원 | 신규 창업자금 등 금융지원 | 산업단지 우선 공급 등 기회제공 | 취업 등 생계 지원프로그램 |
| 매우그렇다 | 3 | 2 | 2 | 1 |
| 그렇다 | 2 | 2 | 3 | 3 |
| 보통이다 | 0 | 1 | 0 | 1 |
| 그렇지않다 | 0 | 0 | 0 | 0 |
| 전혀아니다 | 0 | 0 | 0 | 0 |

가. 철수시 유의사항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기간의 만료, 계약기간의 만료,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경영지속 불가능, 정관의 해산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 청산의 절차를 밟아 기업을 청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외국투자기업 청산법에 따라 청산을 해야 한다.

해외사업을 철수할 경우에는 잔여재산을 우리나라로 회수하고 해외투자사업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등 청산관련 서류를 공증받아 국내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투자기업의 사업철수 방식은 크게 지분매각, 청산, 파산이 있으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내 지역에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철수 방식별로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²⁾

(1) 지분매각

사업철수는 중국측 투자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청산, 파산 방식보다 동의받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며 동의만 얻으면 이후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되어 철수비용이 적게 든다

청산, 파산에 의한 사업철수는 보유자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데 철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헐값으로 처분될 수 있고, 또한 근로자와의 노동계약 해지가 불가피하여 이로 인한 금전적 보상을 해야 한다.

청산, 파산에 의한 사업철수 시에는 관세와 증치세 면제분과 기업소득세 감면분을 추정당할 수 있다.

합자(합작)회사의 어느 한쪽이 지분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합작선의 우선매입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합작선의 매입의사가 없을 경우에 제3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 제3자 매각시 합작선에 제시하였던 가격보다 낮을 수 없으며 합작선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제3자 매각은 무효임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22) 국세청, “중국진출기업을 위한 중국 투자환경과 세정가이드”, 2003, pp.90-98.

(2) 청산

청산에는 보통청산과 특별청산이 있다. 합자(합작)상대방의 동의가 없어 기업 스스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거나 보통청산을 하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때 또는 기업이 법률을 위반하여 법원이 기업폐쇄 명령을 내린 경우에 특별청산을 하게 된다. 청산기간에 기업은 신규 경영활동을 하지 못한다.

(가) 보통청산

기업은 청산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업의 명칭, 구조, 청산원인 등을 기업심사기관, 기업주관부문, 세관, 외환관리기관, 세무기관, 지정은행 등 관련기관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 청산이 의결되면 이때부터 15일 이내에 이사 또는 외부전문가 3명 이상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 성립 후 60일 이내에 신문지상에 2회 이상 채권자 공고하여 채권신고를 받은 후 청산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게 되며, 변제순위는 청산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우선이며, 그 다음으로 종업원 급여, 노동보험비, 국세, 기타 채무순이며 모두 변제하고도 잔여재산이 있으면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에게 분배된다.

이때 비로소 외국측 합자(합작)선은 분배된 재산을 국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출자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개인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청산절차는 청산 개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결해야 하나 심사·인가기관의 허가를 받아 90일간 연장이 가능하며, 청산절차가 종결되면 청산위원회는 청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인가를 거쳐 심사·인가기관에 보고하고, 보고 후 10일 이내에 세무기관 등에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세무기관 등에 말소등록을 한 후 10일 이내에 해당지역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기업말소등록과 동시에 영업허가증을 반납하면 청산절차가 종결된다.

(나) 특별청산

특별청산 방식에 따른 청산이 결정되면 심사·인가기관이 청산위원회를 구성하며, 구성된 청사위원회는 채권자회의를 소집하여 구체적인 청산절차를 채권자회의와 협의한 후 심사·인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청산에 관련한 업무를 전반에 걸쳐 채권자회의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또한 심사·인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통청산 방식으로 구성되는 청산위원회는 당해 기업의 이사가 청산위원을 선임하고 이사 스스로도 청산위원이 될 수 있으나, 특별청산시에는 기업의 심사·인가기관 또는 그 위탁부문이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특별청사위원회는 기업의 심사·인가기관에 청산업무를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하며, 채권자회가가 반드시 설치되어 채권 심사, 청산방법 등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파산

청산과정에서 기업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청산위원회가 인민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이 기일이 도래한 채무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확실한 입증 가진 채권자도 파산선고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업의 부채가 누적되어 채무상환이 불가능하거나, 경영이 악화되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경우 기업 스스로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의 파산선고 후 법원이 지명하는 전문위원으로 파산관재인이 구성되며, 파산기업의 관리와 처분은 법원의 감독 하에 파산관재인이 수행하게 되며 기업파산법을 준용하여 파산재산을 평가 한 후 파산재산의 분배절차가 끝나면 기업은 소멸되며, 법원은 파산종결을 결정하고, 이를 유관기관에 통지하는 한편 그 내용을 공고하고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기업말소 절차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파산절차가 종결된다.

나.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1) 비과세, 감면 등 세제상 지원

해외투자자가 다시 국내에 복귀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에 의한 입법을 통해 해외투자자 창업지원 특별세액감면 또는 비과세 등 혜택을 부여하여 중국투자로 인한 후유증을 치유하고 조속히 국내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신규 창업자금 등 금융지원

해외투자자가 다시 국내에서 사업을 재기하고자 할 경우 제일 먼저 직면하는 애로사항이 사업자금 마련일 것이다. 특히 담보 없이 신용으로 창업자금을 대출받기란 현재의 금융권에서는 위험이 커 직접 실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정책자금을 조달하여 금융권에 자금을 위탁관리하게 함으로써 해외투자자가 다시 국내에서 창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용 또는 장기 저금리로 동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직접 금융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3) 산업단지 우선분양 등 기회제공

국가 또는 지방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할 경우 이들 해외투자자에게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국내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4) 취업 등 생계지원 프로그램 개발

현지에서 기업을 철수하고 국내에 복귀하고자 하는 해외투자자의 경우 대부분 자금부족, 의욕상실 등으로 인하여 사업상으로 재기하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마도 이들 대부분은 실업자로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

하거나 경제적 무능력자로 전락하여 자칫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취업,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 지원을 통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계지원형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 론

중국은 우리나라와 지정학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나라이다.

더욱이 21세기는 그야말로 국가간 긴밀한 관계가 필요한 시대이며, 특히 경제적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지 않고서는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보다 바람직한 나라로 성장하기 힘들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우리나라에게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는 나라다. 현재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앞 다퉈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많은 기관과 단체, 관련 종사자들이 중국에 대해 연구하고 분석하고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는 속담처럼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본 저자도 조세행정을 집행하면서 중국으로 진출하고 있는 현지기업들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 지 항상 생각하고 고민해 왔으며, 마침내 중국조세 전반을 다루면서 현행 중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중국의 세정운영 방향을 합리적으로 예측해보고, 이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했으며, 다음과 같이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현행 중국의 조세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정책성향이 다소 강하고, 조세종목간 중복이 많고, 세율도 높아 조세부담률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법률 규범화 정도도 미약하여 경제적 실질보다는 형식에 치우쳐 조세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향후 중국의 세정운영 방향을 요약해 보면,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이고, 고수입 업종에 대한 체계적 세원관리를 통해 세금징수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의적, 지능적 조세회피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미비된 법규범이나 조세행정시스템을 국제수준에 맞게 국제화, 표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이로 인하여 중국에 진출한 현지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파급효과로는 조세부담의 증가, 인건비, 원자재 등 물가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 중국정부의 규제와 간섭 증가, 무분별한 국부의 유출을 막기 위한 외환관리 강화 등 과거부터 훨씬 부담스럽고 부정적인 경영여건의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넷째, 이러한 경영여건 악화에 대해 중국 현지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게 된 주요 요인들은 무엇인지? 나아가 각 유형별 대응방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해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코자 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관련하여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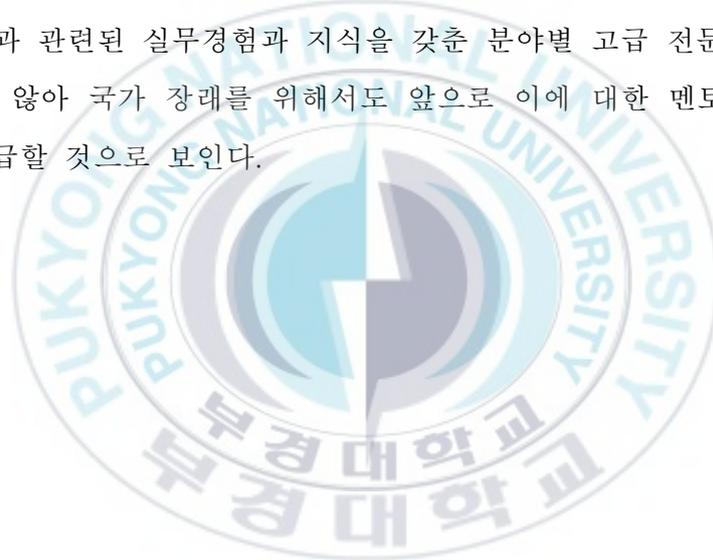
첫째, 본 연구는 시시각각 변화고 있는 중국의 경제상황을 충분히 그리고 만족스럽게 반영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고 견해차이가 많아 일관성 있게 그 내용을 전달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둘째, 설문대상 기업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많이 수렴하여 보다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는 의견을 도출하여 본 논문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자 하였으나 설문대상 업체의 부적격(중국에 현지법인 없는 기업), 응답률 저조 등으로 당초 기대보다 설문지 회수율이 낮아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상기업들과 직접 부딪혀 가며 접근하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셋째, 중국의 조세제도와 연관된 관련 자료나 선행연구가 그다지 많지 않고, 중국 정부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공신력 있는 수치, 통계, 자료 등의 접근이 어려워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인 접근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특히 기존 선행연구의 경우 특정분야에 대한 단편적인 분석이나 중국 조세를 단순히 열거한 경우 많아 본 연구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앞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중국의 조세제도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 졌으면 한다.

넷째, 대학, 연구소, 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다양한 연구기관에서조차도 중국과 관련된 실무경험과 지식을 갖춘 분야별 고급 전문 인력이 그다지 많지 않아 국가 장래를 위해서도 앞으로 이에 대한 멘토(Mentor)의 양성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경규·김선화, “중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http://www.yesform.com>, 2004.
- 김정찬, “중국 조세제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익수, “중국투자론”, (서울: 박영사, 1999)
- 린이후 外(한동훈·이준엽 옮김), “중국의 개혁과 발전전략”, (서울: 백산서당, 2001), pp.127-277.
- 정재호, “중국 개혁-개방의 정치경제:1980-2000”, (서울: 까치글방, 2002), pp.31-34.
- 최강식, “중국 현행 조세제도”, 국세청 국외훈련보고서, pp.3-4.
- 최정석 (2003.5), 중국의 세계개혁 추진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중국 외환관리방법 강화 내용 발표”, 동북아타임, 2004.6.15.
- 한상국, “중국의 최근 조세정책”, 재정포럼 2004년 7월호, pp.7-10.
- 한상국, “중국 조세제도와 대중국 투자기업의 조세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pp.43-46.
- 국세청, “중국 국가세무총국의 2004년 특정항목 조사계획”, 2003.12.31.
- 국세청, “중국진출기업을 위한 중국 투자환경과 세정가이드”, 2003, pp.90-98.
- 재정경제부, “2005년도 해외직접투자동향”, 2006.1.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동북아타임 특별이슈보고, 2004.1.10.
- 한국무역협회, “최근 중국의 세법정책 동향과 대응책”, 북경대표처, 2005.3.22.
- KOTRA, “중국 WTO가입 후 주요국별 중국투자 동향 비교”, 2002.8.
- KOTRA, “최신 중국 조세제도 해설집”, 2003.4.

2. 국외문헌

- 鄧小平, “齋全球化 WTO與現代稅收發展”, 中國稅務出版社, 2002.
- 鄧子基, “世界稅制改革的動向與趨勢”, 稅務研究, 2001.
- 鄧遠軍, “面向21世紀的中國稅制改革”, 2003.2.
- 蔣曉飛, “現代西方稅收原則的發展總勢”, 2003.9.
- 魯錦峰 外 1인, “對我國現行稅制結構約分析與思考”, 2002.10.
- 劉 佐, “中國稅制概覽”, 經濟科學出版社, 2002.
- 馬海濤 外 1인, “應對WTO的我國現行稅制的具體改革設想”, 2002.11.

3. 방문사이트

- <http://blog.daum.net/siliyoon/11300856>
- <http://cafe.naver.com/gaury/84199>
- <http://csf.kiep.go.kr>
- <http://mybox.happycampus.com/j780417/546979>
- <http://nanet.go.kr>
- <http://taxwebs.com/lunwen/lunwen/htm>
- <http://www.chinaacc.com>
- <http://www.lkis.re.kr/jsp/main.jsp>
- <http://www.kaia-edu.or.kr>
- <http://www.koreaexim.go.kr/web/oeis/m01/mainijsp>
- <http://www.mofcom.gov.cn>
- <http://www.moftec.gov.cn>
- <http://www.moftec.gov.cn>
- <http://www.nlc.gov.cn/index.htm>
- <http://www.yesform.com/>

(비)본 조사내용은 통계법 제8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 목적 이외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설문지

| | |
|------|-----------|
| 조사일시 | 2007년 월 일 |
| 설문번호 |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중국의 현행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세정운영 방안을 검토, 분석하여 파악된 내용과 관련하여 중국에 이미 진출하였거나 앞으로 진출 할 계획이 있는 국내기업들이 향후 직면하게 될 경영상 애로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합리적으로 도출함으로써 중국진출 국내기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에 대한 귀하의 소중한 모든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전산으로 처리되므로 귀하의 답변결과는 개별적으로 밝혀지지 않습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연구자 : 강 승 구

(C.P. 011-838-7033, E-mail : kangjo69@hanmail.net)

지도교수 : 최 순 권

㉠. 중국의 조세제도에 대한 문제점 인식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하가 생각하시는 의견에 V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항 | 매 우 그렇다 | 그렇다 | 보 통 이 다 | 그렇지 않 다 | 전 혀 아니다 |
|-------------------------------|------------|-----|------------|------------|------------|
| 1. 정책성향이 강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간접세 비중이 높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조세의 종목간 중복이 많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세율구조가 높고 복잡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법률 규범화 정도가 미약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실질주의보다 형식주의에 의한 과세가 많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정부계획에 의해 세수관리가 이루어진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조세부담의 불공평성이 높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기타 (귀하의 의견을 간략히 기재) | | | | | |

㉡. 향후 중국의 세정운영 방향에 대한 예측정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하가 생각하시는 의견에 V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항 | 매 우 그렇다 | 그렇다 | 보 통 이 다 | 그렇지 않 다 | 전 혀 아니다 |
|--|------------|-----|------------|------------|------------|
| 1.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에 대해 세금혜택을 줄이거나 철폐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고수입 업종(첨단기술, S/W, 변호사, 등)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조세회피에 대한 국가간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세금징수를 강화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조세행정시스템을 과학화·체계화 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세무행정 절차를 보다 간소화 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세법체계를 국제수준에 맞게 국제화 ·표준화 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기타 (귀하의 의견을 간략히 기재) | | | | | |

㉔. 향후 중국의 세정운영 방향에 따라 국내기업이 직면하게 될 파급효과를 측정하고자 하는 문항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하가 생각하시는 의견에 V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항 | 매 우 그렇다 | 그렇다 | 보 통 이 다 | 그렇지 않 다 | 전 혀 아니다 |
|---------------------------------|------------|-----|------------|------------|------------|
| 1.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수익구조가 악화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인건비, 원자재 등 원가상승 압박이 높아질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중국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증가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분식회계에 대한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투자자금에 대한 회수 어려움이 증가할 것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기타 (귀하의 의견을 간략히 기재) | | | | | |

㉕. 향후 중국의 세정운영 방향에 따른 국내기업의 대응방안을 측정하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귀하가 생각하시는 대응방안에 V표시하고, 기타 의견을 간략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응 방 안 | 비 고 |
|------------------------------------|----------------------------------|
| ① 중국의 시장변화에 대해 그대로 적응해 나갈 것이다. | () ①을 선택한 경우, E-1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
| ② 관망 후 철수 또는 계속 투자 여부를 나중에 판단할 것이다 | () ②를 선택한 경우, E-2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
| ③ 당장 철수 또는 투자자금을 회수할 것이다. | () ③을 선택한 경우, E-3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
| ④ 기타 (귀하의 의견을 간략히 기재) | |

☐-1. 위 **D**, ①항을 선택한 경우,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할 항목**들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V표시하고, 기타 의견을 간략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항 | 매 우 그렇다 | 그렇다 | 보 통 이 다 | 그렇지 않 다 | 전 혀 아니다 |
|---------------------------------|------------|-----|------------|------------|------------|
| 1. 신기술개발 자금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중국내 마케팅활동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중국정부와 경제정책 협력강화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중국 과세당국 국내 현지법인 조 사시 적극대응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중국조세 전문가 양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기타 (귀하의 의견을 간략히 기재) | | | | | |

☐-2. 위 **D**, ②항을 선택한 경우, 귀하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V표시하고, 기타 의견을 간략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항 | 매 우 그렇다 | 그렇다 | 보 통 이 다 | 그렇지 않 다 | 전 혀 아니다 |
|------------------------|------------|-----|------------|------------|------------|
| 1. 환율, 금리 등 변동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중국시장의 성장성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원자재 조달가격 변동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인건비 변동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중국과 우리정부와의 관계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기타 (귀하의 의견을 간략히 기재) | | | | | |

☐-3. 위 **D**, ③항을 선택한 경우,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노력해야 할 항목**들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V표시하고, 기타 의견을 간략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 항 | 매 우 그렇다 | 그렇다 | 보 통 이 다 | 그렇지 않 다 | 전 혀 아니다 |
|------------------------|------------|-----|------------|------------|------------|
| 1. 비과세, 감면 등 세제상 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신규 창업자금 등 금융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산업단지 우선분양 등 기회제공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취업 등 생계지원 프로그램 개발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기타 (귀하의 의견을 간략히 기재) | | | | | |

※ 인구통계적 변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항목에 V표시 또는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 ② 여 ()
2. 귀하의 연령은? ()세
3. 귀하의 학력은? ①고졸 () ②전문대졸 () ③대졸 () ④대학원 ()
4. 귀하의 직위는? ①대표자 () ②임원 () ③과장이상 () ④사원 ()
5. 귀하의 귀사 근무연수는? ()年
6. 귀사의 업태 및 종목은? () ※ 예시 : 제조업 / 자동차부품
7. 귀사의 매출 규모는? ① 50억 이하 () ② 51~100억 이하 ()
③ 101~300억 이하 () ④ 301~500억 이하 ()
⑤ 501~1,000억 이하 () ⑥ 1,001억 이상 ()
8. 귀사의 종업원수는? ① 50명 이하 () ② 51~200명 이하 ()
③ 201~500명 이하 () ④ 501~1,000명 이하 ()
⑤ 1,001명 이상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